

외국인투자 가이드 2021



• MAIN SUMMARY

• FDI PROCEDURE

• FDI INCENTIVE

• PRACTICE

• INDIVIDUAL BUSINESS

www.kotra.or.kr

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7 T.1600-7119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외국인투자
가이드 2021**

+



MAIN SUMMARY

주요내용

- 006 2021 외국인투자가이드
주요 변경사항
- 012 외국인투자 관련
KOTRA 발간물 체계도

01



PROCEDURE

투자절차

- 016 외국인투자촉진정책
- 020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 028 투자유형별 절차
- 042 법인설립
- 052 입지
- 068 비자

02



INCENTIVE

인센티브

- 084 조세감면
- 100 외국인투자지역
- 108 현금지원
- 116 R&D센터 특례
- 126 경영지원

03



PRACTICE

사업운영

- 134 조세제도
- 152 통관 및 자본재 도입
- 160 인사·노무
- 174 지식재산권
- 18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186 해산 및 청산

04



INDIVIDUAL BUSINESS

개인사업자

- 194 개인사업자
- 203 부동산 취득

05



APPENDIX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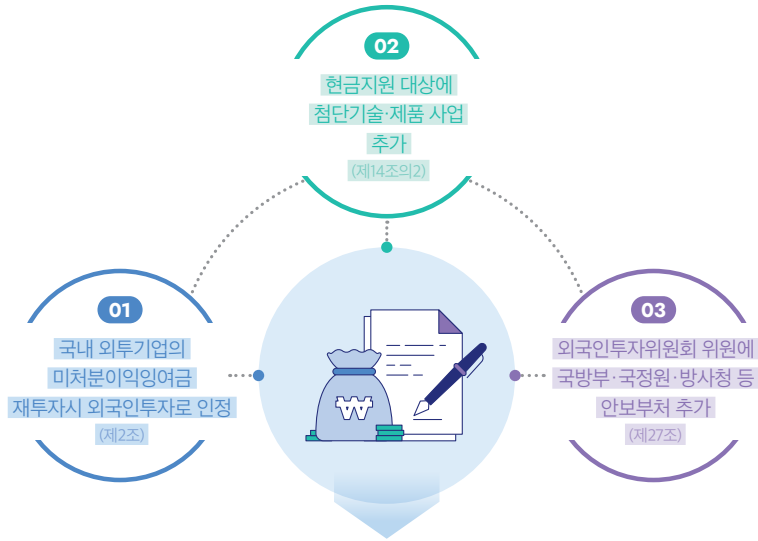
- 214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 216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 218 [별표3] 지방세 세율
- 219 [별표4] 수탁기관
- 221 [별표5] 법무법인
- 229 [별표6] 회계세무법인



2021 외국인투자 가이드 주요 변경사항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외국인투자촉진법(2020.2.6. 공포 2020.8.5. 시행) 주요 개정 사항 p.022



01 |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자로 인정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시에 어려움을 겪어옴

*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미실현 이익금

* OECD와 IMF 등 국제기구,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배당이익잉여금 재투자자를 자본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FDI의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범위

변경 전

- ① 외국인의 국내법인 또는 기업 주식 취득
*투자금액 1억 원이상+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 ② 해외 모기업이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변경 후

- ※ 기존 범위(①, ②) 이외에 ③을 추가
- ③ 외투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

02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함

*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업종은 현재 33개분야 2,990개 기술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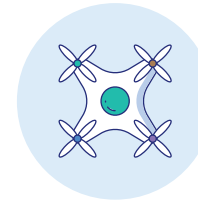
법 개정으로 현금지원 가능한 대상 사례

자율 주행차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 탑재용 비전센서, 레이더 센서, 차량간 통신네트워크, 사고 회피를 위한 센서퓨전 기술, 통합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형 기계



지능형 자율 생산기계, 무인화 스마트 기계, 자율작업 농기계, 자연순환형 기계 등 스마트공장·스마트팜 관련 기계

바이오 헬스



유전자 재조합기술,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개량기술, 혁신형 신약 후보물질 발굴기술, 신체내 생분해 소재 개발 및 제조기술 등

03 |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

현재 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문체·농림·환경·고용·국토·해수부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13명)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추가

국방부



+

국정원



+

방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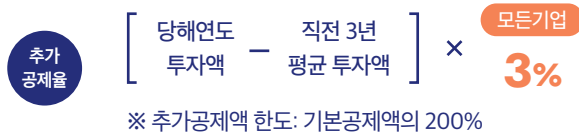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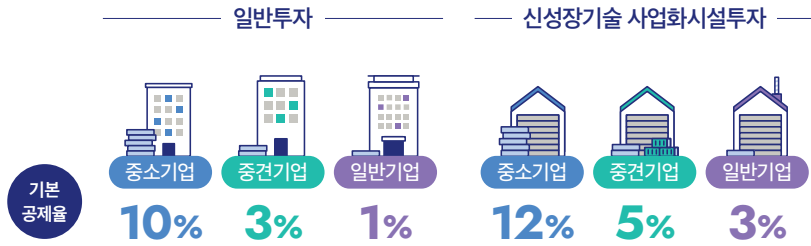


조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2021 시행예정) p.097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통합, 간소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토지·건물·차량 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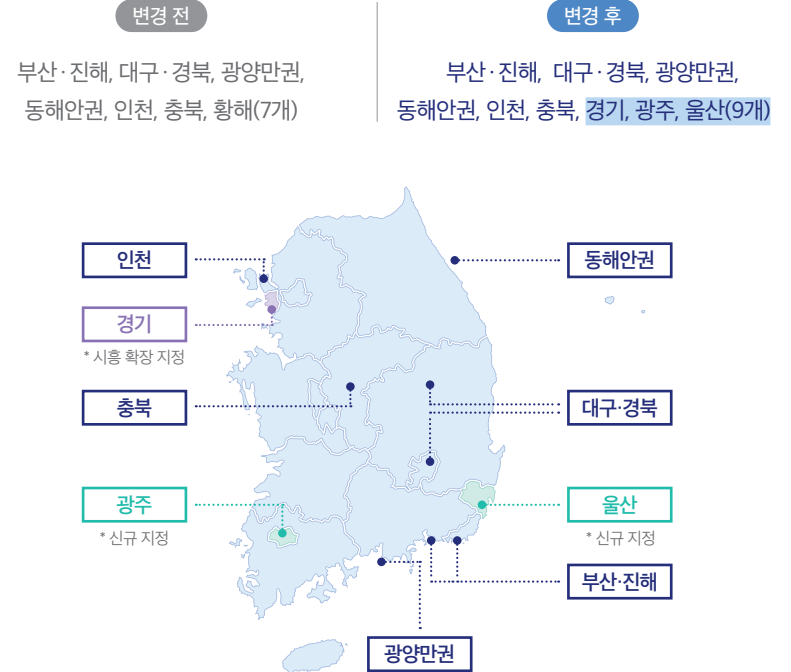


* 납세자는 2021년에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통합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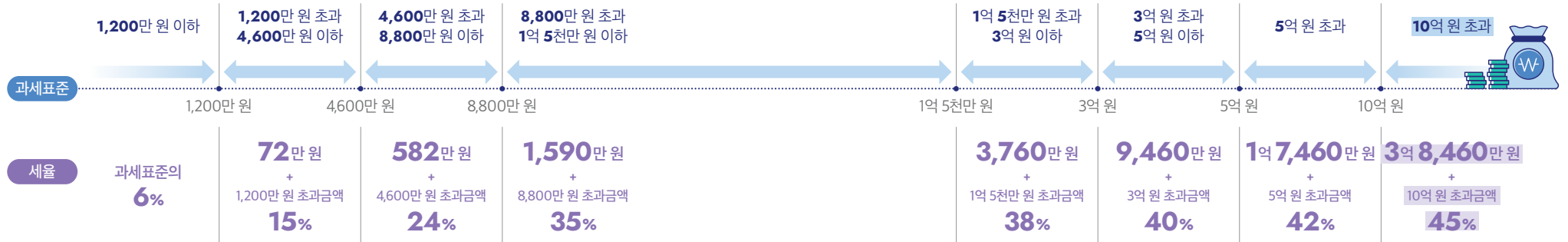
경제자유구역

광주, 울산, 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2020.6.3.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p.065

광주와 울산은 신규 지정, 시흥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확장 지정되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10억 초과분) 신설(기본세율표 개정, 2021 예정) p.138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자

체류지 변경 및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 변경(2020.12.10. 시행) p.072 🇵🇸

변경 전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신고)



신고기간 **14일** 이내

변경 후

법제35조, 제36조 양조항의 내용 일부가 개정되어 **15일 이내로 변경됨**



신고기간 **15일** 이내

기업투자(D-8) 지침 일부 수정(2020.5.15. 수정) p.075 🇵🇸

변경 전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파견 시, 본사에 발급된 파견명령서만 인정

변경 후

해외법인 근무자가 국내법인으로 파견될 때, 이전에는 본사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만 인정하였으나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한 파견명령서도 인정하기로 함**

노무

최저임금 인상 p.166 🇵🇸

변경 전



시간급 **8,590원**
월 환산액 **1,795,310원**

* 2020년 적용 / 209시간 기준

변경 후



시간급 **8,72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 2021년 적용 / 209시간 기준

경영지원

인큐베이팅 조건 p.127 🇵🇸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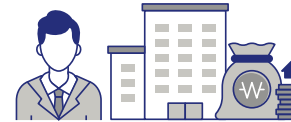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력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신고 30만 달러 이상인 투자기업은 심사를 통해 입주 가능하다.

* 전화상담 : Tel 02-3497-1003

변경 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가 예정된 외국투자자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입주 1년 이내에 투자도착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투자기업은 심사를 통해 입주 가능하다.

* 전화상담 : Tel 02-3497-1000



외국인 유력투자자
or
외국인투자신고 **30만** 달러 이상인
투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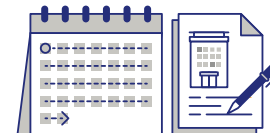
투자신고 예정 외국투자자
or
기존기업 중 입주 1년 이내
투자도착액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부동산

부동산 취득신고 신고기한 p.205 🇵🇸

내국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기한이 통합되면서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의 취득신고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통일됨

변경 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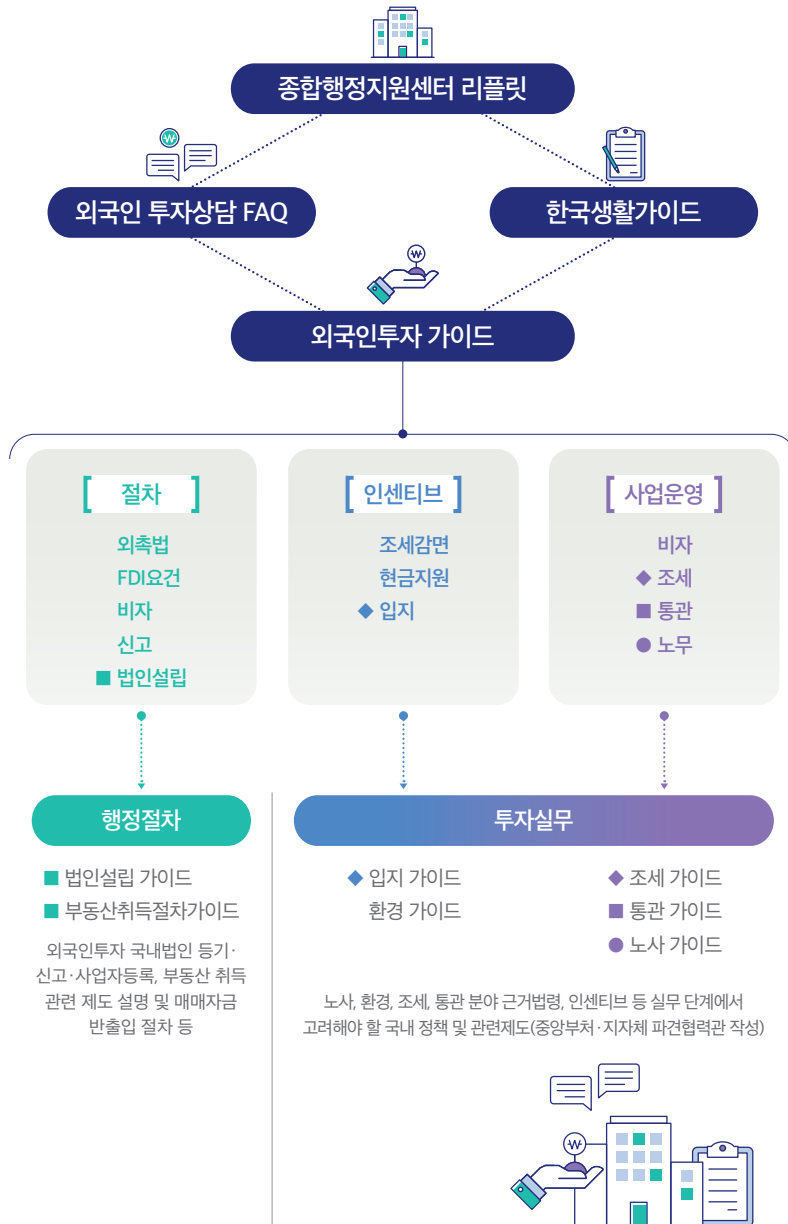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 관련 KOTRA 발간물 체계도

투자 결심 이후,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 상기 발간물은 IK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investkorea.org

투자유치 단계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



※ 상기 발간물은 IK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investkorea.org

Procedure 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촉진정책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 투자유형별 절차
- 법인설립
- 입지
- 비자

CORPORATE
BUSINESSProcedure
투자절차PART
1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 투자자유화
-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 투자인센티브(요약)

대한민국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가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마련해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정책은 OECD, UNCTAD 및 WTO 등의 국제적 권고와 합의사항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인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유화

대한민국은 대외개방적이고 외국인투자가 지원 중심의 외국인투자자유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율

99.7%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 입법,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135개 업종은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투자 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고, 이 중 미개방업종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등 3개 업종이다.

※ 외국인투자 대상 제외 업종(별표1 p.214 ) , 제한업종(별표2 p.216 ) 참조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6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0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장기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가의 신고 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

02. 내국인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03.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동 조항적용을 배제한다.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④항

04. 조세감면 등 차별 적용 배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동법 제30조제①항

투자 인센티브

※ 세부내용 Part 2. 인센티브 참조(p.082) 

01. 외국인투자의 역할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자본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의 동참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 효과와 이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 및 첨단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 허브화를 촉진하며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02. 투자 인센티브


대한민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IN DETAIL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정책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용 친화기업을 우대하며, 지역본부 등 글로벌 허브 외국인투자기업 및 R&D 센터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에 대하여 그 대상을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1.22.]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p.022 ) 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8.5.시행]

※ 관련 법령 변경 시, 비자 심사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될 수 있다.

0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등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외국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사업 혹은 소재·부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혹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시설설치를 수반하는 투자를 할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며 임대 시 임대료 감면의 혜택이 있다.

CORPORATE
BUSINESSProcedure
투자절차PART
2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유형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경우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채,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01. 지분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2명 이상일 때는 1명당 투자금액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

신주, 기존주 인수 모두 가능

IN DETAIL

지분취득의 예외 요건

1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지분 취득 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 봄

02. 장기차관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장기차관은 지분투자 선행 후 제공 가능하며, 평균 차관기간 5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 차관기간계산: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

IN DETAIL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법인출자기업

[외국법인(해외모기업)이 외국투자자인 경우]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개인출자기업

[외국인 개인이 외국투자자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자가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03.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 만 원 이상 출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된다.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②항, 제④항-제⑥항

- ①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출연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경우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04. 신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사용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2020.8.5.시행** ◆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② 사용 용도:
 - **공장 또는 연구시설 신·증설(제조업):**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 신·증설(비제조업):**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INFORMATION

주요 용어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예: IBRD, ADB, IFC 등)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주: 외국 영주권자도 투자자금은 반드시 해외 원천 외화자금으로 투자하여야 함 (현금, 부동산 등의 국내자산은 출자목적물로 인정되지 않음)

외국 투자자



외국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출자 목적물



외국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 (투자수단)

- ① 대외지급수단(외화)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원화) * 외화유입 원칙
- ② 자본재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신청후 세관통관 및 현물출자 완료확인 필요)
- ③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이익분배금) * 원화 재투자 인정
- ④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평가기관
- ⑤ 국내지점, 사무소, 내국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⑥ 외국법에 의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차입금의 상환액
 - 대부채권의 현물출자-12년 상법개정으로 상계방식도 가능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
 - 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⑧ 국내에 있는 부동산(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부동산)
- ⑨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원화 재투자 인정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1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유지되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자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이 경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체류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Q 02 외국인 2명이 공동투자하여 총투자금액이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이 되나?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1명당 투자금액이 각각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Q 03 장기차관의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차관의 기간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 상환하거나 중도상환한 경우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총 차관금액에서 상환한 차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 가중평균상환기간 개념

예)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8년간 10백만 달러를 차입하고 4년 후부터 매년 2백만 달러씩 5회에 걸쳐 균등 상환할 경우 상환기간은?
 가중평균상환기간 6년으로 요건 충족된다.

* 6년 = (8년X2/10) + (7년X2/10) + (6년X2/10) + (5년X2/10) + (4년X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4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외국투자자의 최초 투자신고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투자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후 동일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우선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일종의 증액투자로 간주되어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므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다.

Q 05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에 해당되는가?

외국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Q 0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단체이나 외국투자자가 이러한 조합의 지분율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이 경우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특별법* 등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고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53조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

* 출처: 국민신문고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7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면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적용 대상 회사 규모

- 신고회사(외국투자자) : 자산 또는 매출 3천억 원 이상
- 상대회사(국내기업) : 자산 또는 매출 3백억 원 이상

② 신고 대상 기업 결합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20%(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외국투자가의 자산 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후신고 대상이나 자산 또는 매출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사전신고(이행행위 금지)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함. 다만,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외국환은행 등 수탁기관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받는 것은 가능함(이행행위 금지에 저촉되지 않음)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8 자본재에는 기계 및 차량 등의 시설들만 포함되나?

자본재에는 원료(시운전용 제외), 원자재 등을 제외하고 판매용이 아닌 산업의 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시설, 시운전용 원료, 기술 용역 등이 포함된다.

-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연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9호

Q 09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번 근로소득으로 법인 설립 시 외국인 직접투자 로 인정되는가?

국내원천자금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유형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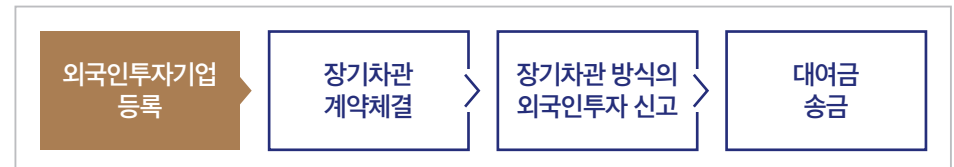
- 신규설립
- 증자
- 기존주 취득
- 장기차관
-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 유형별 외국인투자 흐름도

• 지분취득(신주, 기존주)



• 장기차관



신규설립

신규설립 절차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0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인투자의 국적증명서
(개인: 여권,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 신고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 문의처: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IN DETAIL

기술평가

기술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에 대한 가격평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④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②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자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후대반입 할 수 있으며, 후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하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용으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INFORMATION

임시계좌 개설

국적증빙서류(외국투자가 해당국가 실체증명서 또는 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 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03.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PART 4. 법인설립 ▶ 기업설립 ▶ 03. 법인설립 등기 절차 참조 (p.049)

04. 인허가 취득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PART 4. 법인설립 ▶ 기업설립 ▶ 04. 인허가 절차 참조 (p.049)

0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 PART 4. 법인설립 ▶ 기업설립 ▶ 0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참조 (p.049) 

06.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PART 4. 법인설립 ▶ 기업설립 ▶ 06. 법인통장개설 절차 참조 (p.050) 

0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 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 신청서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증자

외국인투자 흐름도



0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02.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시와 동일한 방법을 거친다.

03. 법인증자 등기


증자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0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 필요서류

증자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1600-7119)

증자등기 시(법인변경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변경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

기존주 취득



01. 계약체결

외국투자자와 기존 국내 주주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02.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03. 투자자금 송금

국내 은행을 통하여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0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취득 시 증자 등기가 필요하나 기존 주식 취득 시에는 증자 등기가 필요치 않다.

★ 필요서류

기존주 취득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인투자의 국적증명서
(개인: 여권,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제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예,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

· 주식취득 관련 증빙서류(예, 주식매매계약서)

※ 문의처: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 신청서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관련 계약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변경 등록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반납

※ 문의처: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장기차관



INFORMATION

장기차관은 외국투자자의 지분출자가 선행된 이후 제공 가능

01. 계약체결

차관제공자(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자와 출자관계있는 외국기업)와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장기차관 계약을 체결한다.

02.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수탁기관인 KOTRA 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03. 대여금 송금

차관제공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다.

04. 입금

외국인투자신고서에 따라 차관제공자로부터 차입금을 외국인투자기업통장에 입금받는다.

★ 필요서류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 해외모기업 또는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차관계약서

* 신고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외국인투자 흐름도



01. 투자계획서 작성

외국인투자기업(신고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투자계획서를 근거로 작성된 신고서와 함께 KOTRA에 사전검토를 받는다.

02.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에 사전신고 하어야 한다.

03. 투자실행

외국인투자기업은 계획대로 투자를 실행한다.
※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인정액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예정액 X 외국인투자비율

★ 필요서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투자계획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외부감사보고서)
-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INFORMATION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 구분 | 신고항목 | 비고 |
|--|--|--|
| 사전 신고 |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내용 변경신고 | 신주, 기존주 취득 또는 출연 (단, 방위산업체인 경우 주식(신주 또는 기존주) 취득 시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신청) |
|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내용변경신고 | - |
| 사후 신고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내용변경신고서 | 외국인투자기업이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에 신고 |
|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 상장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 |
|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
| |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취득 | |
|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 |
| · 매입·상속·유증·증여로 취득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
| ·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 |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 | |

→ 외국인투자 신고는 그 신고항목에 따라 주식취득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취득 후 또는 계약체결 후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사업운영 중 변경사유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

사업 운영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변경신고, 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

| 변경사유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
| 상호 | ○ | ○ | ○ |
| 주소 | ○ | ○ | ○ |
| 자본금 또는 투자금액 | ○ | - | ○ |
| 지분율 | ○ | - | ○ |
| 목적사업 | ○ | ○ | ○ |
| 임원 | ○ | ○ (대표자의 경우에 한함) | |
| 대표이사 주소 | ○ | -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변경사항

① 외국인투자법인 변경등록

외국투자자(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고가 필요한 경우, 투자신고 후 변경등록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IN DETAIL

변경등록의 예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 외국투자자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자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②항제2호~제6호

★ 필요서류

외국투자법인 변경등록 시

- 신청서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필요시 추가첨부 서류]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 예치증명서 사본 / 주주명부(법인인감납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 「상법」 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등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1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초과되어 납입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초과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지방세법」 제28조제②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초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①항에 열거되어 있다.

Q 0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상장이 예정된 증권 등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 03 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외국인투자업무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탁기관 변경이라고 한다. 신청양식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처리준칙」 별지 제2호서식(수탁기관 변경신청서)을 사용한다.

* 신청양식 다운로드

www.investkorea.org

- ▶ 정보센터 ▶ 자료실
- ▶ 자료서식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4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때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가?

외국인투자 신고는 신고내용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투자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고(신고철회 포함)를 할 수 있다.

Q 05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²⁵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²⁶에 따라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Q 06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자금 용도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법인설립등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외국인투자자금과 별도로 설립비용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설립등기가 종료되면 모회사에 반환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6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²⁵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Q 07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장기차관을 주식 또는 지분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상법조문 때문에 실제로 차입금을 준비하여 상환절차를 거쳐 주금납입을 하거나 법원의 승인하에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으로만 출자전환이 가능하였으나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던 「상법」 제334조가 삭제됨으로 인해 지금은 장기차관을 법원의 승인 없이 직접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Q 08 외국인투자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가?

현재 온라인 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외국투자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KOTRA 투자거점 무역관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투자거점 무역관 현황*은 Invest KORE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투자거점 무역관 현황
www.investkorea.org
 ▶ 정보센터 ▶ IK 소개 ▶ 본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

Q 09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를 선정할 때 한국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상업등기법」²⁷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10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CORPORATE BUSINESS

Procedure 투자절차

PART 4

법인설립

- 법인유형
- 법인형태
- 기업설립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자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이다.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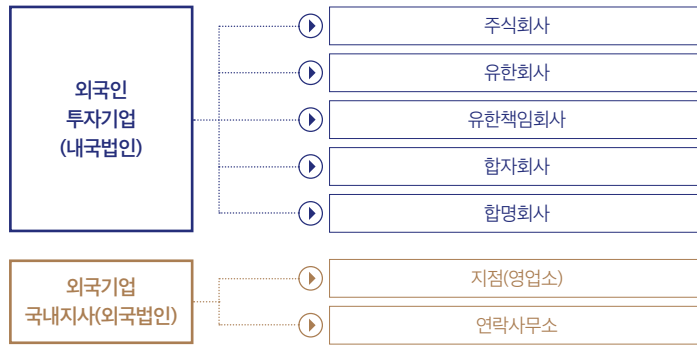
| 항목 | 외국인투자기업 | 지점 | 연락사무소 |
|------------|---|--|----------------------------|
| 근거법규 | 「외국인투자 촉진법」 ^㉔ | 「외국환거래법」 ^㉕ | 「외국환거래법」 ^㉕ |
| 법인성격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 외국인직접투자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 상호 | 제한 없음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 영업활동의 범위 |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
| 최소 투자금액 요건 | 1억 원* | 없음 | 없음 |
| 법적책임 | 현지법인에만 귀속 | 본사까지 확대 | 본사까지 확대 |
| 독립성 |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 본사에 종속됨 | 본사에 종속됨 |
| 국내 차입 |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 거의 불가능함 | 불가능함 |
| 설립절차 | 1. 외국인투자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
| 회계 및 세무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 장부기록의무 없음 |
| 법인세율 | 납세의무 있음 ※ 조세제도 ▶ 국세 ▶ 법인세 참조 (p.136) ^㉖ | | 납부의무 없음 |
| 과세대상소득금액 |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 없음 |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㉗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 없음 | 없음 |

*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㉕에 의한 증권취득 신고(「외국환거래규정」 별지제7-6호서식^㉘) 대상이 된다.

법인유형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이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이다.



법인형태

「상법」 상 인정되는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5가지이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01. 주식회사

회사에 출자한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양도가 용이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 상장이 가능하다. 국내법인들이 대부분 선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02. 유한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감사 면제 등의 적용을 받아 기업의 정보 노출을 꺼리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유한회사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취지 | 대규모 회사에 적합 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인적신뢰 있는 소수자로 구성 |
| 최소자본금 | 제한 없음 (외국인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 | 최동 |
| 지분단위 | 100원 이상 | 최동 |
| 출자양도 | 제한 없음 | 사원총회 승인 필요 |
| 사채발행 | 가능 | 불가능 |
| 이사회제도 | 있음 | 없음 |
| 이사의 수 | 3인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 1인 이상 |
| 감사의 수 | 필수(자본금 10억 원 미만 & 비출자임원이 있는 경우 불필요) | 불필요 |
| 상장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IN DETAIL

외부감사대상

①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또는 주권상장예정법인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다음 4개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 |
|-------|-----------|
| 자산총액 | 120억 원 이상 |
| 부채총액 | 70억 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 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인 이상 |

② 유한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다음 5개 요건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 |
|-----------|-----------|
| 자산총액 | 120억 원 이상 |
| 부채총액 | 70억 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 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인 이상 |
| 사원(출자자) 수 | 50인 이상 |

유한회사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주식회사 보다 높음

※ 관련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시행: 2020.10.13)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외국인이 01 받을 수 있는 사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본사로부터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사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주재(D-7)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국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설립 절차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 필요서류

외국투자가

- 국적증명서(개인의 경우 여권,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 외국법인 대표자의 여권사본 / 외국법인 주주명부(실제소유자 확인서) / 대리인 선임시 위임장 2부

* 여권 외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일반공증 후 영사관 공증

임원(외국인)

- 취임승낙서(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일반공증 후 영사관 공증) / 여권사본

대표이사(외국인)

- 취임승낙서 / 서명공증, 주소지 증명(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일반공증 후 영사관 공증) / 여권사본

INFORMATION

아포스티유 (Apostille) 체결국가

| | |
|---------------|--|
| 아시아, 대양주 18개국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제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필리핀, 대한민국 |
| 유럽 52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북미 1개국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 중남미 30개국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
| 아프리카 12개국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부룬디, 튀니지 |
| 중동 4개국 |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
| 계 | 117개국 |


* 출처: HCC(Hague Conference) www.hcch.net

0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 외국인투자자의 국적증명서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IN DETAIL

기술평가

기술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에 대한 가격평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④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②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자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가능하다. 이 경우 그다음 날부터 사업용으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INFORMATION

임시계좌 개설


국적증명서류(외국투자자 해당국가 실체증명서 또는 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요구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03.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필요서류

법인설립 등기 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설립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

04. 인허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IN DETAIL

인허가 항목 예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수입판매업, 식품제조업, 식품수입판매업,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수입판매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포함), 음식점업, 숙박업, 건강식품 판매업, 건강식품수입판매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주류수입업, 직업소개업 등

0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 필요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

- 신청서 1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3호서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외국환매입증명서 / 대표자여권 / 외국인투자신고서 / 인허가증(필요시업만) 등

* 신청 대리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

06.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필요서류

법인통장 개설 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본사주주명부(실제 소유자 확인서) / 주주명부

* 개설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0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IN DETAIL

단계별 신고서 또는 신청서 양식

단계별 신청서는 각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인베스트코리아 www.investkorea.org ▶ 정보센터 ▶ 자료실 ▶ 자료서식

• 법인설립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제처 www.moleg.go.kr ▶ 검색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 서식

INFORMATION

법인설립 비용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의 회사설립비용의 사례(자본금 1억 원 기준)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등록면허세 | 1,200,000 | 납입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내 설립 시 3배증과) |
| 지방교육세 | 240,000 | 등록면허세의 20% |
| 대법원 수입인지 | 25,000 | 등기신청수수료 |
| 공증료 | 1,000,000 | 정관 등 |
| 합계 | 2,465,000 | |

* 상기표에는 실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수수료는 제외되어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4 구리시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 검색창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별표, 서식 → 별표1

★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CORPORATE BUSINESS

Procedure 투자절차

PART 5

입지

- 산업입지의 이해
-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입지 선정에는 해당 기업의 형태와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설립이 용이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개별입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 입지별 특성

| |  경제자유구역 (9개) |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28개) 개별형(78개) |  자유무역지역 산단 7개, 항만/공항형 6개 |
|-------------|---|--|--|
| 근거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외국인투자촉진법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절차 | • 시도지사 요청 ▶ 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장관 지정 | • 시도지사 요청 ▶ 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지정 |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요청 ▶ 위원회 심의 ▶ 산업부장관 지정 |
| 입주자격 | • 국내 • 외투기업 | • 외투기업 *외투비율 30%↑, 1억 원↑ *신성장동력 산업기술사업, 첨단 제조업, 연구개발업, 물류업 • 외투기업&업종별 최소 금액투자 (조세감면 요건과 동일) *제조업: 3천만\$↑ *물류업: 1천만\$↑ *관광업: 2천만\$↑ *R&D: 2백만\$↑ & 연구원 10인↑ 고용 | • 국내 • 외투기업 *제조업: 수출액 50%↑ *도매업: 수출입액 50%↑ *물류업, 사업지원 업종 |
| 대상 | • 외국인투자기업 | • 외국인투자기업 | • 외국인투자기업 |
| 조세감면 | • 제조업: 3천(1천)만\$↑ • 물류업: 1천(5백)만\$↑ • 관광업: 2천(1천)만\$↑ • R&D: 2백(1백)만\$↑ & 연구원 10인↑ 고용 • 의료기관: 5백만\$↑ • 개발사업자: 3천만\$↑ | • 제조업: 1천만\$↑ • 물류업: 5백만\$↑ | • 제조업: 3천만\$↑ • 물류업: 1천만\$↑ • 관광업: 2천만\$↑ • R&D: 2백만\$↑ & 연구원 10인↑ 고용 |
| 지방세 | • 감면업종 및 금액/감면기간/감면비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준을 따름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감면 가능(취득세, 재산세 등) | | |
| 관세 | • 수입자본재 5년간 100% *7년형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 • 수입자본재 5년간 100% *개별형: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 • 면제 |
| 입지지원 | •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50년, 50~100%) | • 임대료 감면: (부지가액의 1%, 75~100%) | • 국가-지자체 일괄매입 • 국유지: ~50년 임대 (부지가액의 1%수준, 50%~100%감면) |

산업입지의 이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입지 선정에는 해당 기업의 형태와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주요 수요처와 관련 시설이 집적화된 계획입지로서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쉽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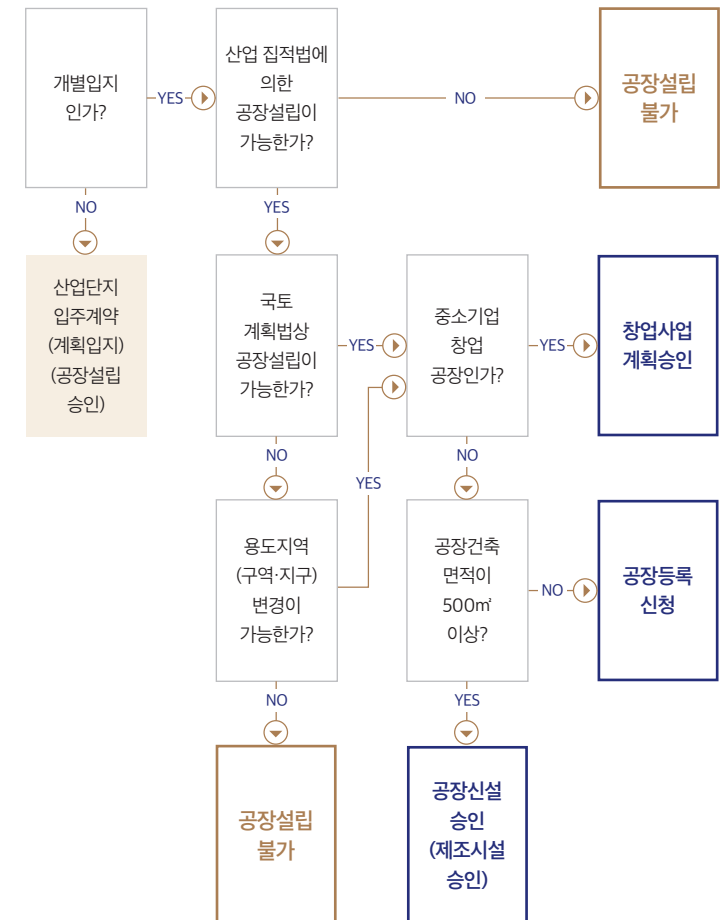
다만 국내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입지가 별도로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입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투자자가 영위하려는 업종 특성에 따라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업종별 특성이 있는 다른 계획입지, 또는 개별입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자가 고려할 수 있는 입지유형



산업입지는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입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제조업을 예로 들면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데 입지에 따라 공장설립절차 및 인허가가 다르다.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나, 산업단지같이 제조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계획입지는 공장설립 기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앞서 예로 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지를 찾았다면, 해당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토지이용제한, 공장건축 가능여부, 환경관련 규제 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해야 한다.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절차



01.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대한민국은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표적인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여건,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별 부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취득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① 계획입지(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근로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하여 지정·개발한 지역으로, 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를 돕고 산업의 집적을 통한 협력기업 및 인력 확보, 원활한 원자재·부품 공급 등의 편익을 제공한다. 최근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는 등 복합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입지 유형이 다양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업종 관리 방식도 개별입지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같은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입지별로 입주 가능한 업종이 다르고, 각각의 단지별로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각 단지별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지를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역, 연구개발특구 등은 각 개별법을 따른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입주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산업단지가 모든 입지 유형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지역을 산업단지에 중복 또는 개별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특수목적 지역 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기도 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된 입지인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이다.

INFORMATION

산업단지의 공장 매각(처분) 제한

산업단지는 산업집적을 유도하고자 실제가치보다 낮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 용지를 분양받고 입주한 후 단시일 내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그 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통한 공개매각, 매수가격통제 등의 처분신청제도를 통해 매각 가능하다.

→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부지를 매수한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② 개별입지

개별입지는 계획적으로 지정·개발된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 외의 토지나 도시·주거지역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했을 시, 직접 용도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제조업종의 사업을 위해 개별입지를 선택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별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일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 용도지역별 가능업종은 「공장입지 기준고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참조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장·단점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등 SOC 여건 양호 · 공장설립 관련 허가절차 용이 · 기업 집적으로 기업 간 정보·기술 교류 용이 · 물류비 절감 · 정부의 기업지원이 개별입지에 비해 원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토지 확보 가능 ·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 재판매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가능 소규모 입지 선택 가능 · 공장부지의 처분이 용이 |
|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설립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나 매각 시 별도 제한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 · 산업단지에 비해 조세 감면, 금융지원, 인센티브 부족 · 기반시설(도로, 우수 등) 직접 설치 · 공장 주변 환경요소 통제 곤란 |

02. 공장설립

공장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건축물 또는 공장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총칭한다. 이때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IN DETAIL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설립 승인 절차



① 산업단지(계획입지) 공장설립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달리 많은 부분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고, 업종 또한 산업단지별로 제한되어 있어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승인신청'과 동일한 행정효과가 있는 '입주계약신청'을 관리기관에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5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나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10일 내 승인이 이루어진다.

입주승인 후 공장건설, 완료신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확인 및 공장 등록까지의 절차는 개별입지의 절차와 같다.

② 개별입지 공장설립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별입지 공장설립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이 많아 모든 법령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시 대한민국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토 후 승인을 받는다.

설립하려는 공장 부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청을 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제처리*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7일 이내로 승인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의제처리 :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 입주기준 확인신청

해당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 공장건설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후에 토지 평탄화, 기반시설 설치, 건축 등을 시행한다.

• 공장등록

건설 및 기계, 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최초 신청한 것과 같이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설립 완료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을 한다.

INFORMATION

제조업소

제조를 위한 건축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제조업소의 경우 공장등록은 임의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등 업종별 행정절차 이행 후 제조업 영위가 가능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장등록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을 완료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을 통해 인허가 의제도 함께 득할 수 있다.

소기업

소기업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로서 제조업소에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자가 공장등록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 증명 서류로 간주한다.

* 관련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㉔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 내용

| 부담금 | 관련법 | 부담금 | 관련법 |
|----------|------------------------------------|-------------|--|
| 부담금 | 「지방자치법」 ㉔ 제138조 | 폐기물 부담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㉔ 제12조제①항 |
| 농지보전 부담금 | 「농지법」 ㉔ 제38조제①항 |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㉔ 제19조제①항 |
| 대체초지 조성비 | 「초지법」 ㉔ 제23조제⑥항 | 물이용 부담금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㉔ 제30조제①항 |
| 기본 부과금 | 「대기환경보전법」 ㉔ 제35조제②항제1호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㉔ 제32조제①항 |
| 기본배출 부과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㉔ 제41조제①항제1호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㉔ 제30조제①항 |
| 부담금 | 「전기사업법」 ㉔ 제51조제①항 |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 「산지관리법」 ㉔ 제19조제①항 |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부담금 면제. 다만,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는 사업개시일
 ※ 관련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㉔ 제39조의3

IN DETAIL

공장설립 제한 및 예외 적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㉔ 제20조제①항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적으로 성장관리권역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㉔ 제20조제④항 성장관리지역 중 평택시 안에서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일정 업종에 한한다.

※ 관련규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㉔ 제25조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Factory-On(www.factoryon.go.kr 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공장설립 정보제공, 설립실무 안내, 공장설립 민원, 산업단지입주, 제증명신청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공장설립 지원센터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13개소에 공장설립 지원센터 운영(서울, 인천, 경기, 원주, 천안, 대구, 구미, 울산, 부산, 창원, 광주, 군산, 광양)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actoryon.go.kr ㉔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지원팀
 070-8895-7266

공장설립 절차 법령

| 법령 | 내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㉔ |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부지조성 인허가, 입주계약 등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㉔ |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 가능(개별입지) |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토지이용 관련 법령

| 법령 | 내용 |
|------------------------|---|
| 「수도권정비계획법」 ㉔ |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내 공장입지 제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㉔ |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 규정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㉔ |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지정하고 조성(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 「건축법」 ㉔ | 건축물의 용도를 29개로 구분(건축, 용도변경 절차 규정) |
| 「사도법」 ㉔ | 사도개설허가 절차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㉔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등) |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법률

| 법령 | 내용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㉔ |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㉔ | 산업기술단지 내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
| 「중소기업기본법」 ㉔ | 중소기업 사업자의 범위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㉔ |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환경관련 법률

| 법령 | 내용 |
|--|---|
| 「 대기환경보전법 」 [㉸]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종'을 규정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 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 「 소음·진동관리법 」 [㉸] | 화학물질 취급 현장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 세 가지 부문에 대한 지침사항 |
| 「 폐기물관리법 」 [㉸] |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 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 환경영향평가법 」 [㉸] | |
| 「 화학물질관리법 」 [㉸]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

조세지원

| 법령 | 내용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

INFORMATION

공장설립 시 환경 인허가 및 공장 운영 시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참고 자료

외국인투자기업 환경정책 2020 (KOTRA)

Download 



외국인 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

01.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의 외국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 있으며, 입지는 임대 또는 분양의 형태로 지원된다. 이러한 지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지지원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이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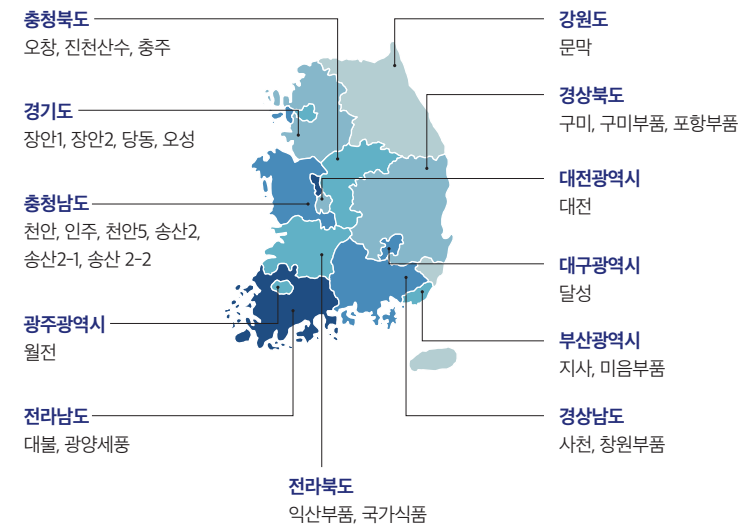
2020년 12월 말 기준

| | 단지형 | 개별형 | 서비스형 |
|----------|-----|-----|------|
| 지정 현황(개) | 28 | 78* | 3 |

* 공식적인 집계는 '21년 3월 이후 발표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내 주요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페이지 참조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수준

2020년 12월 말 기준

| 단지명 | 임대료 (원/m ² -월) | 단지명 | 임대료 (원/m ² -월) | 단지명 | 임대료 (원/m ² -월) |
|---------|------------------------------|--------------|------------------------------|--------------|------------------------------|
| 천안(충남) | 320 | 달성(대구) | 241 | 문막(강원) | 249 |
| 대불(전남) | 74 | 구미부품 (경북) | 155 | 진천산수 (충북) | 144 |
| 사천(경남) | 234 | 오성(경기) | 323 | 송산2(충남) | 290 |
| 구미(경북) | 171 | 포항(부품) | 127 | 국가식품 (전북) | 122 |
| 오창(충북) | 227 | 익산(부품) | 103 | 충주(충북) | 160 |
| 장안1(경기) | 262 | 창원남문 (부품) | 451 | 송산2-1(충남) | 290 |
| 인주(충남) | 165 | 미음(부품) | 470 | 광양세풍 (전남) | 248 |
| 당동(경기) | 383 | 천안5(충남) | 207 | 송산2-2 | 290 |
| 지사(부산) | 446 | 월전(광주) | (1차)214 (2차)250 | 대전 | 374 |
| 장안2(경기) | 303 | | | | |

02. 경제자유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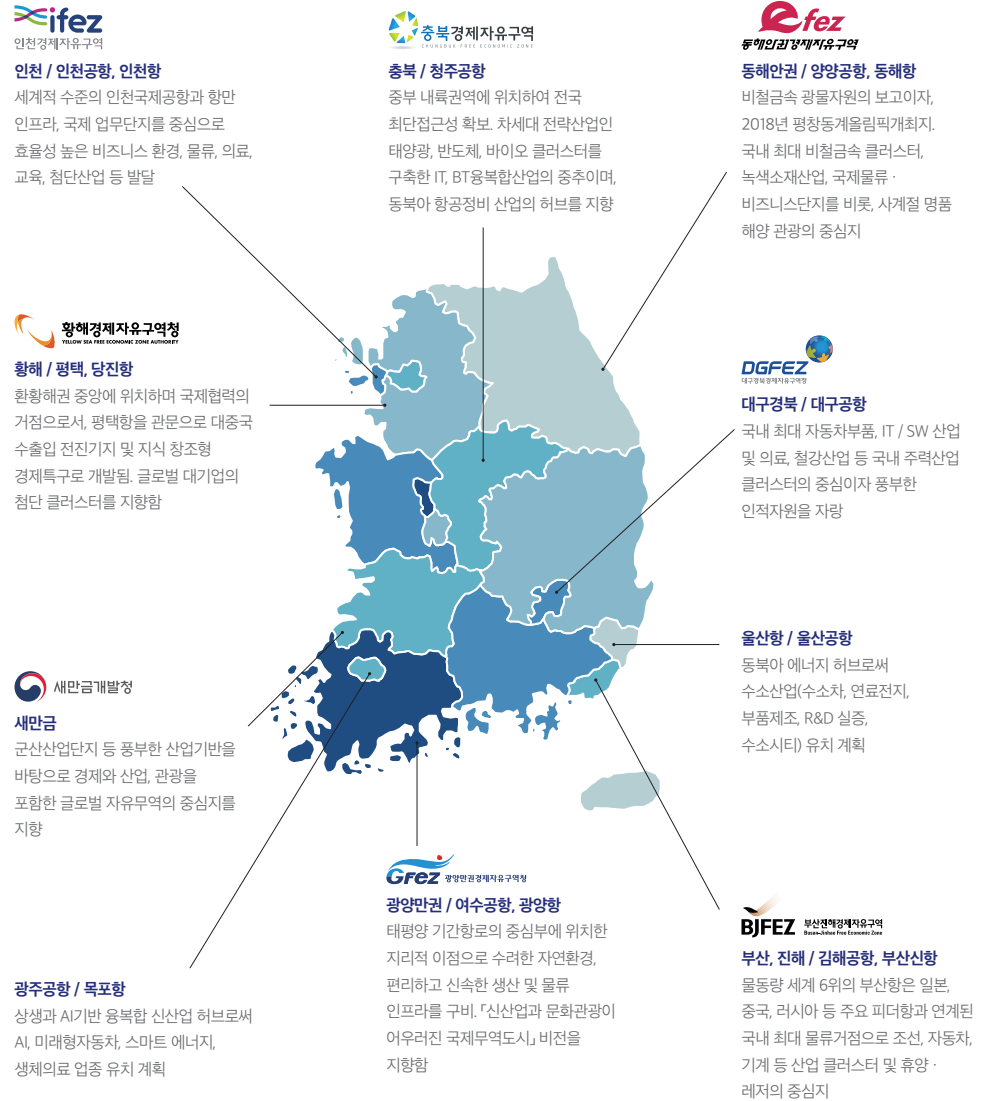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극대화해준다.

또한 다양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도 활용된다.

새만금은(2018.4. 경제자유구역지정 해제) 새만금 특별법으로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용지 공급 및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새만금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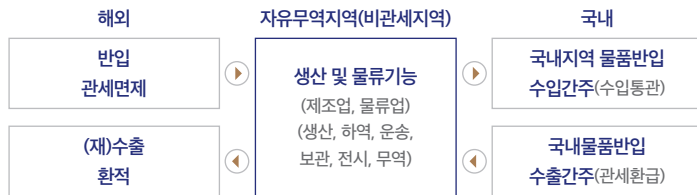


* 광주,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20년 신규지정되었으며, 21년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예정

03. 자유무역지역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특별지역으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지원시설 등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관세유보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출입 활동에 유리하다.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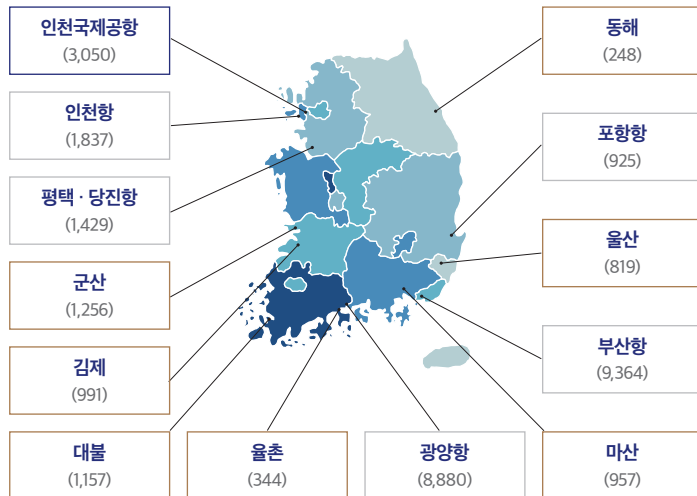


* 출처 : 산업연구원,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특구의 내실화 방안 연구」, 2013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2019년 12월 말(단위 : 천km)

□ 공항형 □ 항만형 □ 산업단지형



IN DETAIL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지식산업·국내 복귀기업·수출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써 이전 3년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기업 등에게 주어진다. 기타 하역운송 등 서비스 업체와 공공기관 등 제반자격 등이 있다.

※ 관련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04. 기타 입지

① 투자유지 중점 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이외에도 새만금,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투자가를 포함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각의 개별법으로 지정되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② 연구개발, 기술, 업종별 집적지역

연구개발·기술·업종별로 산업단지와 중복 또는 개별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어,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해당 특구지역 내 산업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과 특화, 연계산업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단지의 운영 및 관리는 각각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준해 이루어지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리계획을 확인해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한다.

| 구분 | 지정 지역 | 관련 법령 |
|------------|--------------------------|---------------------------|
| 첨단의료복합단지 | 대구 선서혁신도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연구개발특구 |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신동, 둔곡, 도룡지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뿌리산업특화단지 | 안산도금협동화단지 등 33개 지역 |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
| 물류단지 | 강릉 등 23개 물류단지 운영중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 중 대표적인 종류만 나열하였음

CORPORATE
BUSINESS

Procedure
투자절차

PART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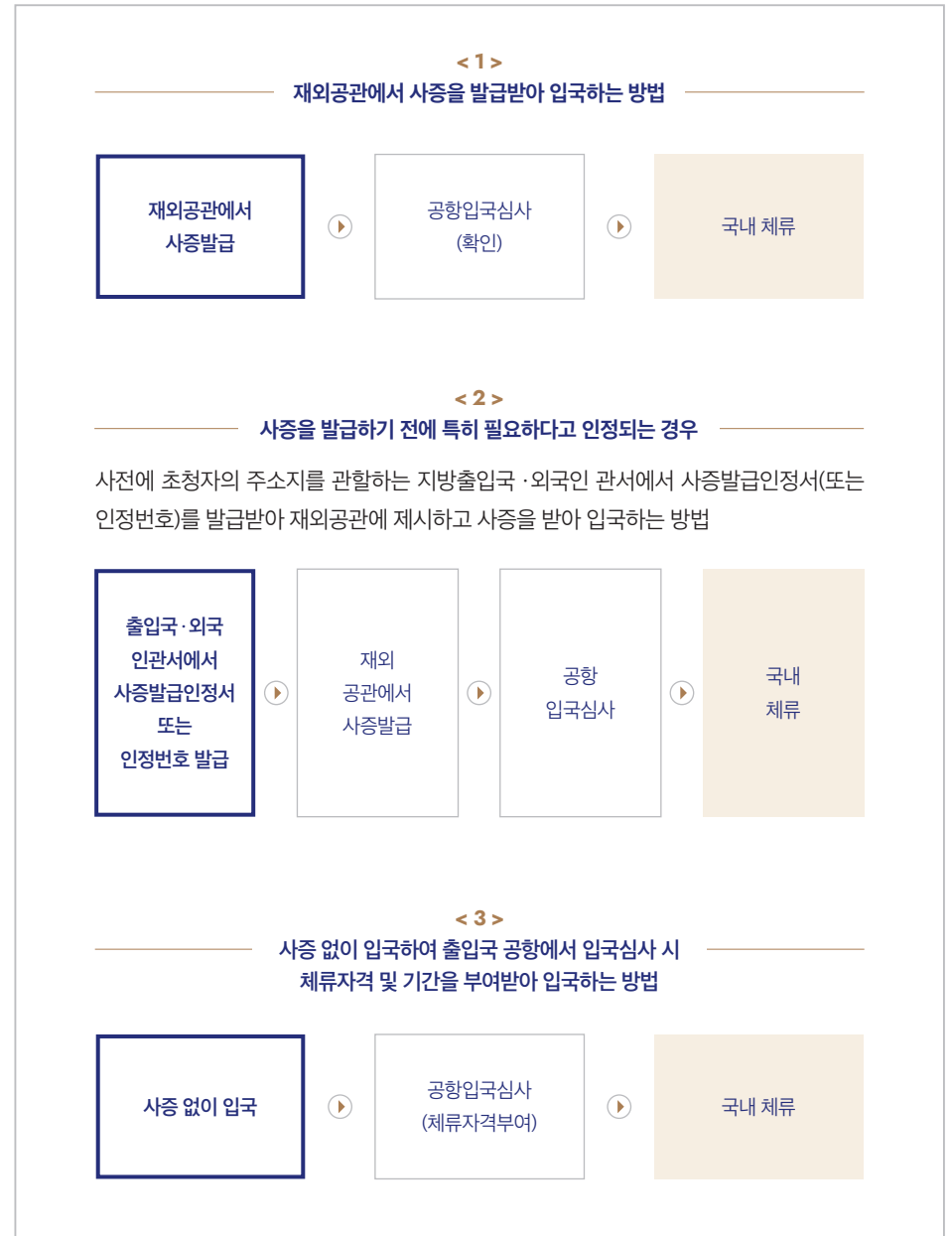
비자

- 입국
- 기업투자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 체류자격별 사증신청
- 출입국 우대제도
- 고액투자가, 투자기업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
- 공익사업 투자이민
- 부동산 투자이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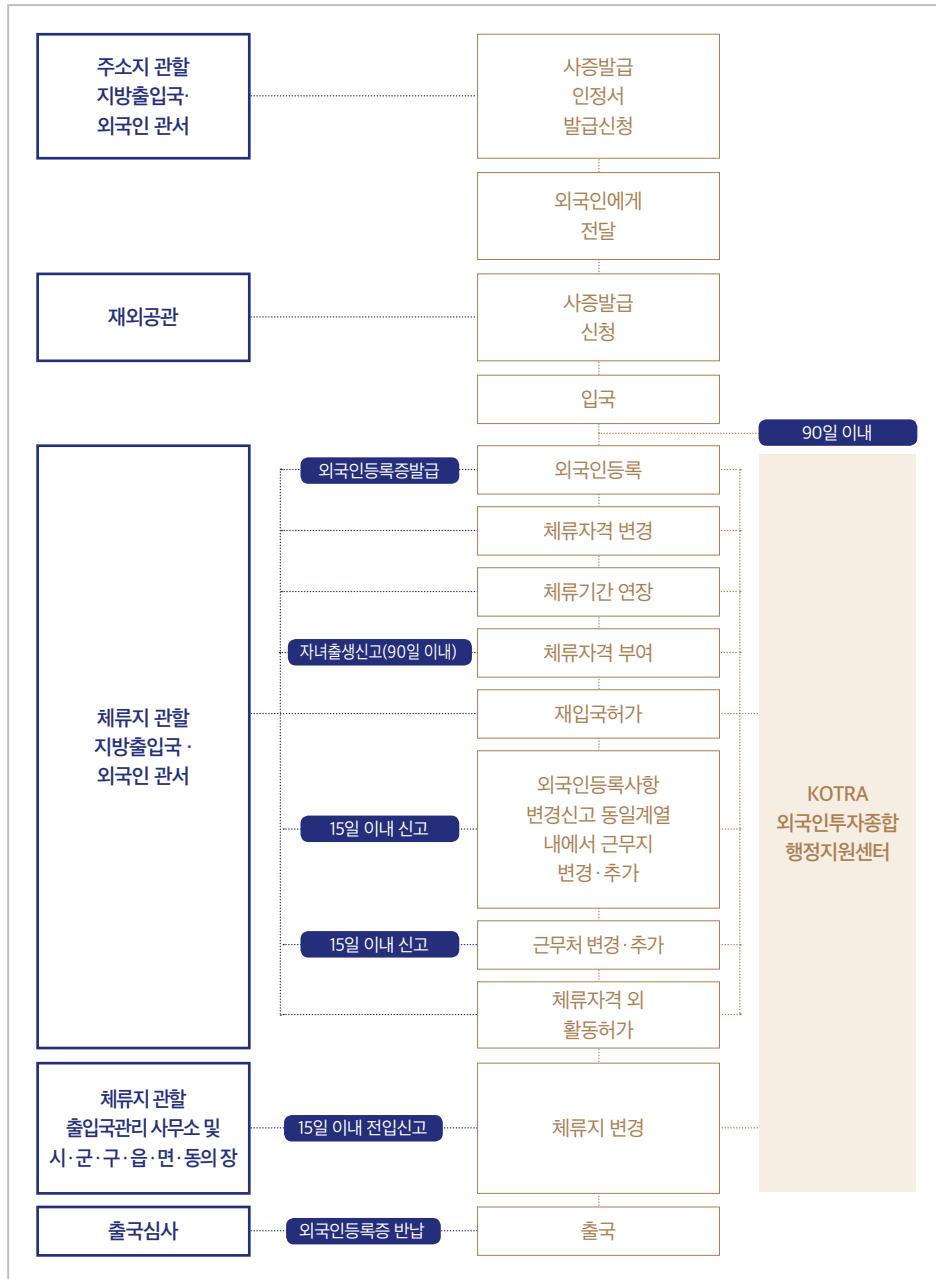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무사증국가의 국민이 입국하여도 무단 입·출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의 경우에도 국경이나 공항, 항구 등에서 출입국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입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또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01. 사증발급

① 절차

사증발급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은 사증을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는 방법, 단기방문사증 보유자 또는 사증면제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입국 후 출입국심사를 통해 체류자격과 기간을 부여받는 방법, 그리고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② 사증발급 방법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재외공관장 사증발급 범위 : 법무부장관이 위임한 사증을 정해진 범위내에서 발급한다.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내초청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하여 인정서 또는 발급 번호를 받는다. 후자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 인정 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 사증을 발급받는다.
- 단기방문 사증 보유 또는 무사증 입국 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D-8 등)을 변경한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인정유효기간 : 3개월

02.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장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03.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이 기존에 승인받은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다.

INFORMATION

①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이상 국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③ 체류와 관련한 외국인 본인 신청 의무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본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질병, 가사, 업무상 사정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 시에도 외국인 본인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해외체류하면서 여권을 공수하여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 신청 제한 및 허가 취소 등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상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출석이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04. 변경 시 신고사항

① 근무처 변경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근무처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해당자·법무부고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다.

②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위반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다.

③ 체류지 변경

등록외국인이 그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주의 신고의무

취업활동 자격이 부여된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사망한 때,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출처: 알기 쉬운 외국인고용과 비자 실무가이드(박길남·정봉수, 강남노무법인 권)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외국투자가의 사증 및 체류 관련 편의를 위하여 KOTRA에서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파견되어, 체류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체류지 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투자지원센터(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함)에서도 외국투자가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의 체류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체류외국인의 민원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 6개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는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예약 접수증을 소지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긴 대기 없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INFORMATION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 사증과 각종 체류허가에 대한 내용 안내

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 사증 및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체류민원방문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

체류자격별 사증신청

01. 기업투자(D-8) 사증

① 발급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 또는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에게 발급된다.

-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직원들도 파견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파견명령서 상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필수전문인력은 경영·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IN DETAIL

필수 전문인력 범위

-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 **상급관리자**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 지휘 /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 **전문가**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 신청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② 국내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단체관광이나 순수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자, 단기방문(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일부 국가의 국민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관광목적으로 개별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부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의 국민 등의 경우는 국내에서 D-8 사증으로 체류변경이 불가능하다.

③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에 게 해당된다.

④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는 체류기간변경서류와 유사하며, 실적에 따라 가감 될 수 있다.

★ 필요서류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시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㉞)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결핵 검사 의무화 대상국(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본사 또는 해외 현지법인(직전 근무지)발행, 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본사 또는 해외 현지법인(직전 근무지) 발행)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학위증 등에서 택 1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중에서 - 납세사실증명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 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㉞)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결핵 검사 의무화 대상국(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통장 및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외화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휴대반입한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 필증(수출입면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02. 특정활동(E-7) 사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한 분야에서(85개 직종) 근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형태로서 원칙적으로 사증인정발급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취득하게 되나 첨단기술의 전문적인 기술자 등 제한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

03. 동반(F-3) 사증

D-8 또는 E-7 등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에게 부여되며 동반하는 가족은 D-8 또는 E-7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IN DETAIL

사증신청 시 유의사항

자료제출 시 국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증 및 체류심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필요서류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㉞) /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결핵 검사 의무화 대상국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D-8-1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초중고 재학여부신고서(만6세이상 만18세이하) / 재학증명서
- 수수료(자격변경 10만 원 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 원(현금))
※ 모든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

-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㉞) /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외국인등록증 / 결핵 검사 의무화 대상국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D-8-1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초중고 재학여부신고서(만6세이상 만18세이하) / 재학증명서
- 수수료(연장수수료 6만 원)
※ 모든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INFORMATION

체류자격의 종류 (36개 체류자격 구분)

| 구분 | 체류자격별 대상 |
|----------|---|
| 외교공무(A) | 외교(A-1), 공무(A-2), 협정(A-3) |
| 사증면제(B)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
| 비영리단기(C) |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
| 장기체류(D)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
| 취업(E,H) | 교수(E-1), 화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총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H-2(방문취업) |
| 동반거주(F) |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동포, 난민 제외, 결혼이민(F-6) |
| 기타(G) | 기타(G-1) |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 C-3(단기방문), F-1(방문통과),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

출입국 우대 제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투자자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투자자의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01. D-8 사증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투자사증(D-8)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 면제 항목 : 외국인등록증발급(3만 원), 체류기간연장허가(6만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10만 원), 재입국허가(3~5만 원)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수수료(12만 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2천 원)는 면제되지 않는다.

02. 출입국 우대카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본사 또는 아시아 지역본부의 경영진에 대하여 출입국 전용심사대(Fast track) 이용, 보안 검색 전용 창구 이용 등이 가능한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를 발급하고 있다.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요건

| 구분 | 외국인투자금액(신고기준) |
|---------------|---------------|
| 제조업 | 미화 15백만 달러 이상 |
| 금융, 보험 | 미화 50백만 달러 이상 |
| 도소매, 운송, 창고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 기타 | 미화 10백만 달러 이상 |
| 연구개발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산업 | |

→ 출입국우대카드 유효기간 경과로 갱신할 때 외국인투자금액은 당초 신고금액의 50% 이상이 도착하여야 한다.
신청 및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02-3497-1971

고액투자가, 투자기업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

01. 거주(F-2) 사증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거주자격(F-2)을 부여할 수 있다.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자에 대하여도 F-2 자격부여가 가능하다.

02. 영주(F-5) 사증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영주자격(F-5-5)을 부여한다.

고액 외국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임원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원(감사 또는 이사만 해당)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특별공로자 영주자격(F-5-12)을 부여할 수 있다.

→ 정규직으로 고용된 국민 10명당 임원 1명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법인당 최대 10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영주자격이 부여가능하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고액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부여 제도로서 대한민국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하는 제도로서 투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혼자녀까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및 미혼자녀까지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 절차



IN DETAIL

공익사업투자이민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원금보장 무이자 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한 경우
법무부, 한국산업은행에서 투자이민 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우대 금융대출상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건립에 기여한다.

- 원금이 보장되고 언제든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나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시 기존에 부여받은 거주자격이 상실된다.

※ 문의처 :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032-740-7788, 7600

부동산 투자이민제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IN DETAIL

부동산 투자이민자에 대한 안내문/ 출처 : www.visa.go.kr

1. **투자상태 유지** 투자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주거나, 담보설정 또는 압류된 경우, 매매한 경우에는 투자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투자요건을 상실할 경우 외국인등록은 말소되며 투자비자로 계속 체류할 수 없다.
2. **취업 또는 경제활동** 부동산 투자이민(F-5)비자를 소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업, 경제활동, 학업 등이 자유롭지만, 사행행위나 풍속에 저해되는 영업이나 취업은 금지된다.
3. **재입국허가 기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1년 안에 최소 1회 이상 국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이 말소된다.
4. **체류기간 연장** 부여받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이 말소된다.
5. **문의처** : 법무부 투자이민센터(032-740-7888)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INFORMATION

비자 및 정주여건에 대한 참고 자료

한국생활가이드 2020 (KOTRA)

Download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사증과 체류자격의 차이는?

01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머물면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지위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에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 36개의 체류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VISA와 체류자격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된다.

Incentive 인센티브

-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지역
- 현금지원
- R&D센터 특례
- 경영지원

조세감면

- 대상 및 절차
- 감면혜택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외국인투자과 관련하여 취득세·재산세·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 적용대상 | 조세감면 내용 | 관련 규정 |
|---------|------------------------------|--------------------------|
| 외국인투자기업 |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
|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①, ②항 |
| 외국인 기술자 | 근로소득세 50% 감면 (5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 외국인 근로자 | 19% 단일세율 적용가능 (5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

대상 및 절차

01.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의한다.

| 구분(관련 규정) | 투자요건 등 | |
|--|-----------------------------|------------------------------|
| | 대상사업 | 투자금액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운영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 | 제조업 등 관광업 |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①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 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 기업으로 감면 |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 | 물류업 SOC R&D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 | 공동사업 |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 구분(관련 규정) | 투자요건 등 | |
|--|---------|--|
| | 대상사업 | 투자금액 |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제조업 | |
| | 관광업 | |
| | 휴양업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 | 국제회의시설 | |
| | 청소년수련시설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 물류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 | 의료기관 | |
| | R&D |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 제조업 |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①항제1호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 제조업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 | 물류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 | 제조업 등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 | 물류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 | R&D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①항 | 제조업 |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조 | 제조업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 | 관광업 | |
| | 물류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 | R&D |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
|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①항제2,5호 | 제조업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 | 물류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INFORMATION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11개 분야 40개 세부분야, 총 173개 기술

| 구분 | 분야 |
|-------------|---|
| 미래형자동차 |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
| 지능정보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IT 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
| 차세대 SW 및 보안 |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보안 |
| 콘텐츠 |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
| 차세대전자정보 |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부품,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
| 디바이스 | 고기능 디스플레이, 3D프린팅, AR 디바이스 |
| 차세대 방송통신 | 5G 이동통신, UHD |
| 바이오·헬스 |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학 |
| 에너지신산업·환경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
| 융복합소재 | 고기능성유, 초경량 금속, 하이퍼 플라스틱, 타이타늄, 구리합금, 몰리브덴, 특수강, 기능성탄소·접착소재 |
| 로봇 |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 로봇, 로봇공동 |
| 항공·우주 | 무인이동체, 우주 |
| 첨단소재·부품·장비 | 첨단소재, 첨단부품, 첨단장비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개정 2020.2.11)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기술

소재기술 11개, 공정기술 5개, 총 16개 기술

| 유형분류 | 대상기술 |
|--|--|
| 소재기술 |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
| | 플렉서블 전도성 소재 기술 |
| | 마이크로 LED 소재 기술 |
| |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
| | 지능형·기능성 센서 소재 |
| | 탄소복합체 신소재 기술 |
| | 3D프린팅용 복합소재기술(친환경, 의료용, 심미용) |
| | 고기능성 화학품 신소재 기술 |
| | 유전자 검사용 초소형 바이오 반도체 소재 |
| |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소재 (Organic-Inorganic Hybrid Nano-Materials)기술 |
|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EP, Super Engineering Plastics) 소재기술 | |
| 공정기술 | 지능형 전력반도체 모듈 기술 |
| | 대화면 플렉시블 OLED 제작 기술 |
| | 난삭 메탈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
| | 기능성(내열성, 초소형) 렌즈 수지 및 제조 공정 기술 |
| | OLED 소재 패턴 정밀화 향상 기술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4 (신설 2017.3.17)

02.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②항

신청서 제출처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25)이며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수탁은행) 및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2017.4.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5조제②항

신청기한은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조세감면 신청절차

| | |
|-------------------------|-------------------------|
|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선택사항) | 기획재정부 |
| ↓ | |
|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수탁기관 (외국환은행 및 KOTRA) |
| ↓ | |
| 조세감면 신청 | 기획재정부 |
| ↓ | |
| 조세감면 여부 결정 |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
| ↓ | |
| 조세감면 여부 통보 | 기획재정부 |

★ 필요서류

조세감면신청 또는 내용변경신청 시

- 신고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0호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2에 따른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각각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외국투자가가 투자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신고 이전에 조세감면대상사업 여부 확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인의 효력은 조세감면의 대상 기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투자신고 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②항

②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주무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③ 비감면사업으로 결정예고통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한다.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②항,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①~⑥항

IN DETAIL

조세감면(조세감면내용 변경,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2017.4.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2

★ 필요서류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시

-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1호서식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2에 따른 제출 서류

* 각각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Check List 

신성장동력산업 조세감면 신청 체크리스트

| 점검항목 | YES | NO |
|--|--------------------------|--------------------------|
| 1. 신청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4의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조세감면신청서의 조세감면 신청내용에 정확히 작성) ex)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2)지능정보 가.인공지능 분야 중 3)사각이해 기술에 해당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기술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특허권, 공인기관의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및 기술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 신청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출 | | |
| ① 기술의 핵심부분을 요약한 요약본(1~2p) 제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② 기술의 특성 및 구체적 설명자료 제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③ 기술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범위 기재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 신청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 |
| ①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업에 한함) 등의 설명자료 제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② 신청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는 공장 위치 등을 증명하는 자료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5. 신성장동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하, 감면관련 사업)이 있는지 여부 •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관련 사업의 생산방식 및 공정표 등의 자료 제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6.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7. 영어 등 외국어로 된 주요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출처 : 기획재정부

감면혜택

0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내용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구분 | 사업 | 기간 및 감면비율 |
|------------------------|---|--|
| 취득세 및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과세표준에서 공제) |
|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 및 사업자 등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④항

IN DETAIL

예외 :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사업개시일 전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기산일을 '사업개시일'이 아닌 재산을 '취득한 날'로 하여 상기 기간 및 비율만큼 감면받는다.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②항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의한 상기 감면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02.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① 신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간

자본재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투자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장 신청하여 1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총 6년).

③ 제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필요서류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시

- 신청서 1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3호서식 :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외국인투자))
-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조세감면결정서) 1부
- 대외지급수단 등 또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자본재의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추징사유별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의 추징범위

| 추징사유 | 대상 조세 | 추징범위 |
|---|----------------------------|---|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 말소일·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소급하여 3년 내 감면세액중 양도 후 외국인투자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
| | 취득세, 재산세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x 주식 등의 양도비율 |
| 외국인투자 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은 3년) 이내에 출자 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 요건에 미달할 경우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 외국인투자 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신고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
|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당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취득세, 재산세 | 추징세액=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전 5년 이내 감면한 세액 x 주식 등 미달비율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8, 9

④ 감면세액의 추징 및 배제

감면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된 관세 및 지방세를 추징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⑤항, 동법 시행령제116조의10제②항

IN DETAIL

외국인기술자 적용대상

1.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2.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독립된 연구시설, 연구시설투자 1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
적용기한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9조

03.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7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2021.12.31.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한하는 일몰조항)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지역본부에서 근로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기한의 제한 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2021.12.3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④ 과세특례 적용방법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INFORMATION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공해 온 법인·소득세 감면제도를 2018년 말 폐지하였으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은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법인·소득세 감면에 대한 기 결정된 기업은 2019년 이후라도 결정된 감면기간은 보장하고 있다.

04. 내·외국인 동일 적용 세액공제

①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산출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 지원구분 | 법인세 공제율 |
|---------------------|---------------------------|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 |
| 에너지 절약시설 | |
| 생산성 향상 시설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2% |
| 환경보전시설 | |
| 근로복지 증진시설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 |
| 안전시설 |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대기업 1%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①항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시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공제요건 | 공제율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해당되고 전년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 이며 전년대비 상시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동법 시행령 제22조의9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년 시행예정)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 등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구분 | 일반투자 |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 |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 기본공제율 | 10% | 3% | 1% | 12% | 5% | 3% |

추가공제율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 항목들을 통합한 것이다. 납세자는 2021년에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통합투자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다.

* ①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④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 세액 감면

| 지원구분 | 감면요건 관련규정 | 법인세 감면 |
|------------------|----------------------|----------------------------|
| 연구개발특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
|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 |
| 제주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9 | |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 |
| 금융중심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 |
| 첨단의료복합단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 |

⑤ 고용중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중대세제 지원 (고용증가 1인당 공제 금액)

(단위 : 만 원)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그외기업 |
|---------------------|-------|-------|------|------|
| | 수도권 | 지방 | | |
|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 1,100 | 1,200 | 800 | 400 |
| 그 외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공제기간 : 중소·중견기업 3년, 그 외 기업 2년 / 적용기간 : 2021.12.31.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⑥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세액을 감면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한도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⑨항의 창업중소기업 31개 업종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⑦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 구분 | 감면요건 | 법인세 감면 |
|-------------|--|---|
| 창업 중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 :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 5년간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전년대비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가능 |
| 일반 중소 중견 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46개 업종의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 투자 * 중견기업은 근로자수 감소 시 미적용 | 특별세액감면(법인세 5~30% 감면) 투자세액공제 · 해당 투자액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중견기업은 1~2%로 지역별 차등 적용) * 위기지역 내 기업이 투자 시 공제율 상향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7조

INFORMATION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 기준은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1. 업종기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

2.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

3. 독립성 기준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혹은 기준 초과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특정 기간 동안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4. 중소기업 관련 민원

① 콜센터 1357 (FAX) 042-472-6083

② 전자민원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민원참여 ▶ 전자민원

③ 서면민원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④ 방문민원 정부대전청사로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민원담당자 (042-481-8933)에게 연락

⑤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정부 부처, 지자체단체 등 450여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CORPORATE
BUSINESSIncentive
인센티브PART
2

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고시·관리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종류는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41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주요건 충족을 위한 외국인투자금액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와 5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주 취득이나 우회투자에 의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임대기간은 총 50년의 범위 내이며, 매 10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며 투자 내용에 따라 임대료 및 조세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01. 입주대상업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의 업종으로,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조세특례제한법」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산업발전법」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유통산업발전법」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02.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단,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은 50%) 이상으로 입주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한한다. 또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거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03. 입주한도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최소 12% 이상)을 적용하고, 업종별 임대면적의 한도는 공장부지가역의 1배 이상이어야 한다. 즉, 입주한도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면적 크기에 따라 투자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04.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연간 임대료는 당해 투자지역 취득가액(개별공지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공지시가)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입주기업”,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이상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입주기업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05. 임대료 감면

감면율은 외국인투자가가 납입을 완료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시점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을 적용한다.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이상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 이상으로 임대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

| 감면율 | 사업 | 조건 | | 비고 |
|------|---------------|------------------|-------------|----------------|
| | | 투자금 | 상시근로자 수 | |
| 0% | 입주기업 | 정상 임대료(취득가액의 1%) | - | - |
| |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 - | - |
| 75% |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 70-150명 미만 | - |
| |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 150-200명 미만 | - |
| 100% | 제조업 | 미화 500만 달러 | - | 소재부품 단지입주기업 |
| |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 200명 이상 | - |
| |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 미화 100만 달러 이상 | - | - |

* 감면율은 정상임대료에서 감면되는 비율, 현실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국·공유 재산 임대)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06. 협력업체 입주제도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 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

외국투자자의 희망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지원이다.

01. 지정기준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02. 지정요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금액을 충족하면서 공장시설(사업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 지정된다.

| 금액기준 | 업종기준 |
|--------------|---|
|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사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문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검토 시 외국인투자금액 중 지정 전에 납입 완료된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 투자금액이 개별 투자지역 지정 희망지역의 부동산 구입 등 외국인투자 지역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자들 간에 투자계획의 실행과 이행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03. 지정신청

시·도지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4. 임대료 및 입주한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우,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입주면적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한다.

05. 지정변경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투자계획 및 지정고시 등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로 변경 고시 할 수 있다.

※ 개별형 외국인지역 지정 현황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http://www.kicox.or.kr) 내 주요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페이지 참조

★ 필요서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시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지제2호서식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 재원조달계획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관리기관 / 개발사업의 시행자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⑥항제2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제조업 중심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는 달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연구시설 등 서비스업종으로서 지역 및 건물에 대한 입주 수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01. 지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대해 지정요건에 적합 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내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02. 지정요건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 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재산(건물 포함)에 대해 일정 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신고금액이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03. 입주대상 업종

연구개발업(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 산업(「산업발전법」),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은 제외)

04. 입주요건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 계약시점 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별 최소고용인원

| 구분 |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
|----------|-----------------|--------------------------------------|
| 연구개발업 |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 |
| 금융 및 보험업 | |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 |
| 지식서비스산업 | 15인 이상 | |
| 문화산업 | | |

-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을 납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관광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①항에 따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이상의 투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3, 별표4

05. 임대

임대부지인 경우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업은 50년), 임대건물인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동일 기간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06. 건물임대료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임대료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단,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1 외국인투자 합작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외국인투자의 투자 없이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증자를 하게 되어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 자격 미준수로 인한 현실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입주기업이 사업계획 이행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율 10% 이상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Q 0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투자 이행기간은 얼마인가?

입주기업의 사업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되는 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단한다.

Q 03 장기차관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입주한도를 충족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계속하여 입주가 가능한가? 또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장기차관의 만기 상환은 가능하나,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입주한도가 미달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현실임대료인 취득가액의 5%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 단지형 외국인지역 지정 현황 : [입지별특성 참조 \(p.053\)](#)

Q 0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후 입주기업은 언제까지 사업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5년이다.

Q 05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지원 혜택은 없다.

CORPORATE BUSINESS

Incentive 인센티브

PART 3

현금지원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현금지원 신청 절차



현금지원이란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또는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R&D센터 또는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기업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심사 및 협상을 거쳐 사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현금지원절차

KOTRA 투자거점무역관, Invest KOREA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에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 Invest KOREA의 외투현금지원센터와 PM은 요건 충족여부, 신청 및 심사절차 등을 상담·지원한다.

| 절차 | 주체 | 세부 내용 |
|-------------------|--|--|
| 현금지원 신청 01 | [신청] 투자가(기업)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KOTRA |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 협상담당자 지정 PM 지정 및 신청 |
| 심사 02 | 사전평가위원회 (미처분이익잉여금재투자 한정) 및 평가위원회 | 현금지원 사전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 한도 산정 03 | 한도산정위원회 | 한도산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
| 건의서(협상안) 작성 04 |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 기획재정부 | 건의서(협상안) 작성 후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 |
| 심의·의결 05 | 외국인투자위원회 | 현금지원여부 결정 |
| 계약체결 06 |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 투자가 | 계약체결 후 현금지원금 지급 (일시·분할지급 가능) |
| 사후 관리 07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KOTRA | 투자이행 및 집행실적 점검, 현금지원금 이행내역 검토 |

★ 필요서류

현금지원 신청 시

- 신청서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3서식)
-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 신청인의 재무제표(증액투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도 포함)
-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해당 확인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신고한 경우)
- PM으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해당 의견서

※ 관련규정: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6조

지원대상

신주취득 방식(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도 포함)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장기차관에 의한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01.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 공정기술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①항제1호에 따른 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02. 첨단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을 신·증설
 ※ 관련규정 : 「산업발전법」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1

03. 소재·부품

섬유, 펄프, 화학, 의약,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등
 ※ 관련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시행규칙 별표1

04. 고용창출

제조·건설·운송·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여가서비스업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이상 등 고용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④항, 별표2

05. R&D센터

신성장동력기술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소재부품장비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연구경력자)의 상시 고용규모로 연구시설 신·증설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①항제4호

06. 지역본부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의 해외법인의 생산·판매·물류·인사 등 핵심기능의 지원·조정을 하는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해외모기업 매출액 3조 원 이상, 외국인투자지분율 50% 이상, 핵심기능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07.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 산업에 해당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 관련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지원항목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금 분담비율

| 항목 | 수도권 (국가·지방자치단체) | 비수도권 (국가·지방자치단체) |
|-----------------|--------------------|---------------------|
|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40:60 | 60:40 |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 | |

※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사업의 경우 국가분담비율을 10% 상향가능

현금지원 신청 절차

01. 신청서류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는 현금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 첨부서류와 PM의 현금지원과 관련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02. 지원여부 심사

현금지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상관계자인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Invest KOREA의 PM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수준·기술이전효과(기술성),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산업성), 투자의 생존가능성(재무성)을 평가한다.

03. 지원한도 평가

협상관계자 및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도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이외의 투자가성,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의 질, 입지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한도를 산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한도내에서 협상담당자가 외국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필요서류

현금지원 신청 시

• 투자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①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을 포함하고, 사업보고서 등 이용가능한 관련자료 별도 제출)
- ② 총 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
- ③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 포함)
- ④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 및 집행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
- ⑤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 ⑥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
- ⑦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포함)
- ⑧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및 내외국인 구분)
- ⑨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별도 제출)

- ⑩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기업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 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 ⑪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택한 이유(한국과 대체투자국 비교 시장·단점 포함)
 - ⑫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 기능 수행여부 등 포함)
 - ⑬ 기타 필요한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금지원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 관련규정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 현금지원 신청서 ㉔ 첨부서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㉔ 제6조 제3항, 별지제4호 서식

04. 협상 및 지원금 결정

현금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이후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된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05. 지급방법

현금지원금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계약체결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분할지급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하며,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06. 계약체결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신청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현금지원 계약기간, 현금 지원금의 지급 방법, 임대용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IN DETAIL

1. 사후관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계약기간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 연구개발등의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 연도의 사용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책무

신청인은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자산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복구 및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현금지원계약 이행보고서 ㉔, 제3호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 ㉔ 참조

- 자산을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 신청인은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다

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분야는 결산보고서 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법 제2조 제①항 제4호 라목(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따라 현금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은 현금지원 계약 체결 즉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설정해야 한다.

3. 지원금 감액 또는 환수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INFORMATION

Invest KOREA 투자전략팀(외투현금지원센터)의 역할

| 구분 | 내용 |
|------------------|--|
| 1. 상담 | 외투현금지원센터에서는 외국투자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제도와 관련된 지원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상담·지원한다. |
| 2. 수요조사 | 현금지원을 희망하는 외국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별, 시기별 현금지원의 규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
| 3. 평가 및 심사 | 현금지원의 평가 및 한도산정을 위하여 사전평가위원회(미처분이익잉여금 채투자), 평가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현금지원계약서 작성 시 검토 등을 지원한다. |
| 4. 협상담당자 및 PM 지정 | 외국투자자는 현금지원을 신청하기 전·후에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 또는 협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상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KOTRA는 PM을 지정하여 신청인을 지원한다. |

※ 현금지원 관련 문의 02-3460-7852, 7834

사전심사제도

KOTRA 사장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 신청 전에 사전심사를 통한 현금지원 협상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포함)과 협의한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 협상안에는 대상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현금지원의 최소 요건 및 현금지원 금액의 최소금액(또는 비율)전체 상한금액, 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 등이 포함된다.

협상안이 승인되면 협상담당자는 1년 내에 외국투자자와 협상(1년 범위 내 기한 연장 가능)을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현금지원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현금지원 신청을 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다.

- 현금지원신청 시 필요서류 중 국내외 시장동향, 향후 5년간 추정 재무 제표, PM 의견서는 제출 생각한다.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제7조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부지를 임대 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등 임대 부지를 제공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으로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시키게 되어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 ⑥항

CORPORATE
BUSINESSIncentive
인센티브PART
4

R&D센터 특례

- 기업부설연구소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정부는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미래먹거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연구개발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부서의 신고를 통하여 연구인력, 조세, 관세,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 신청을 통하여 연구인력, 조세, 금융 등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시설이 있을 경우 현금지원, 조세지원, 입지지원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 시설은 기업투자(D-8)사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40,693개, 연구개발전담부서 27,787개 (2019년 9월 현재)

※ 관련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01.
신고방법

연구소 / 전담부서를 설립한 후 일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고절차



* 처리기한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기업 측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문의처 (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

KOITA 연구소인정팀 02-3460-9141~46, 9013~17

02. 인정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구분 | | 신고요건 | |
|----------|--------------|---|--------------------------------|
| 인적 요건 | 부설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는 2명) |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 국외소재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 무관하게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 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IN DETAIL

연구소 요건 충족 기준

①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 규모에 관련 없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학위 이상보유자로서, 연구개발 활동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하거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인정 기준을 참조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③항

②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없이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 등은 연구공간에 있어야 한다.

03. 지원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등록한 기업은 조세, 관세, 인력, 자금, 판로, 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조세 및 관세지원

| 지원항목 | 관련규정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일반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별표6) |
| | 신성장동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별표7) |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①항 |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 |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관세법」 제90조제①항제4호 |

② 자금지원

| 사업 부처 | 주요 내용 | 관련사업 정보 |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술개발사업 지원 |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한국과학창의재단 www.kofac.re.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등 핵심기술 개발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
| 중소벤처기업부 |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중소벤처기업부 www.smtech.go.kr |

③ 인력지원

| 지원항목 | 관련 내용 | 문의처 |
|---------------------------|----------------|----------------------|
| 전문연구요원제도 | 병역대체복무제도 | KOITA 02-3460-9124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채용, 파견) |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지원 | KOITA 02-3460-9082 |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지원 | KIAT 02-6009-3541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자산형성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1357 |
|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인턴프로그램 경비지원 | 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6 |
|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 전문인력양성 지원금 | KIAT 02-6009-4375 |
| 해외고급과학자 초빙(Brain Pool) 사업 | 유치경비, 연구지원비 | 연구재단 042-869-6377 |
| 고용추천서(Gold Card) 제도 | 해외기술인재 고용추천장 | KOTRA 02-3460-7338 |
| 글로벌인재 발굴서비스 |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 KOTRA 02-3460-7337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 채용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1350 |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이공계 인력 중개 | KOITA 02-3460-9033 |

④ 기술지원

| 사업 부처 | 주요 내용 | 관련사업 정보 |
|------------|------------------------|---------------------------------|
| 산업통상자원부 | 신뢰성바우처사업(소재개발지원) | www.신뢰성바우처.org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K-Global 프로젝트 | k-global@nipa.kr www.nipa.kr |
| |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 www.koita.or.kr |
| | 학연 공동 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사업 |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www.smbacon.go.kr |
|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www.exportcenter.go.kr |
| 특허청 | IP-R&D 전략 지원사업 | http://biz.kista.re.kr/ippro |
|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 www.kipa.org |

연구개발 서비스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 또는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이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연구개발서비스업 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행 운영기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등록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현황 : 연구개발업 821개, 연구개발지원업 710개 (2019년 8월 현재)

※ 관련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5조

| 구분 | 사업 내용 | 신고대상 업종 |
|----------|--|--|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위탁연구)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농학 연구개발업 ·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 그 밖에 자연과학연구개발업 ·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
| 연구개발 지원업 | R&D컨설팅, R&D기획 및 평가, 연구장비의 대여 및 거래, 기술경영 및 기술전략, 과학기술정보의 분석과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 주체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 물질성분 검사업 ·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 출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지원제도

01. 신고방법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절차

| | |
|---------------|--------|
| 서류 접수 보완요청 | 온라인 등록 |
| 서류 심사 | 협회 |
| 현지확인 | 협회/신청인 |
| 신고승인 | 협회 |
| 신고증 발급 | 온라인 |

→ 처리기한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문의처 (연구개발서비스업 신청)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TEL 02-540-4172 / FAX 02-540-4132

이메일 : korsia@mdservice.or.kr / 홈페이지 : www.mdservice.or.kr

02. 인정요건

인정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매출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구분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
| 인적요건 | 이공계인력 5명 이상 | 이공계인력 2명 이상 |
|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 해당 없음 |
| 매출액요건 |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이상 | |

03. 지원 내용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등록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연구인력 지원,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인력지원

| 지원항목 | 관련 내용 | 문의처 |
|--------------------------|------------------------------|--------------------|
|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선정기업 지정 제도 |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병역법」 제36조, 제39조 | KOITA 02-3460-9124 |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선정기업 지정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한다.

② 참여지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산업통상 자원부 | 중소벤처 기업부 | 국토 교통부 | 농림축산 식품부 |
|------------------|------------------|--------------------|---------------|--------------------|
| · 기초연구사업 | ·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 ·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 | · 건설기술 연구사업 |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
| · 우주기술 개발사업 | · 기술이전·사업 화촉진사업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 플랜트 연구사업 |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
| ·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 ·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 국토공간정보 연구사업 |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 · 핵융합·가속기 연구지원사업 | | · 중소기업 상용 화기술개발사업 | · 철도기술 연구사업 | · 첨단생산 기술개발 |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 | · ESP (기술전문기업) | · 항공안전기술 연구사업 |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
| · 산업기술 개발사업 | | | | |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인건비 현금 계상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비 중 내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③ 금융지원

| 지원항목 | 내용 |
|--------|--|
| 기술보증제도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성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
| 기술평가제도 |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을 표시하는 제도 |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220 |

④ 조세지원

| 지원항목 | 내용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자로 지정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확인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
| 중소기업 특례 적용 |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
|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설비투자 시 감면 |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금액 세액공제 |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 및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연구개발을 위해 출연금 등 자산을 받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상당금액을 익금불산입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감면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 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04. 처리 절차

연구개발서비스업 설립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후에 현지 확인이 진행되며 회사와 관련된 추가서류를 제출한다.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1 연구만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연구전담부서만 있고 다른 부서는 없는 상황이며 다른 업무(관리 등)는 대표이사 혼자 담당하고 있는 경우 연구전담부서 신청이 가능한가?

신청기업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이외에 다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다른 부서에 적어도 1인 이상의 상시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 및 상시종업원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Q 02 경제동향 등에 대한 연구활동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시장조사, 경제동향연구 등의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활동은 인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 내 전산시스템 운용 등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이나 제품의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바뀐 경우 등은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다.

Q 03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방법과 혜택의 차이는 무엇인가?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록의 물적요건은 동일하나 인적요건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의 세제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하나,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역특례 제도에서 차이가 있다.

Q 04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개발 활동 이외의 시간에 영업지원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설립 3년 이내의 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이 기업의 대표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 관련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CORPORATE
BUSINESSIncentive
인센티브PART
5

경영지원

- 인큐베이팅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지원
- 출입국지원 레드카펫 서비스

인큐베이팅

KOTRA가 운영하는 IKP(Invest KOREA Plaza)는 외국투자가 전용 인큐베이팅 시설로서 초기 투자정착 지원을 위해 사무실 등을 제공한다.

행정지원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총별 비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투자가 전용 사무실,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 상담실, 영상회의실, 수면·샤워실 등 제반시설을 제공하여 외국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가 예정된 외국투자가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입주 1년 이내에 투자도착액이 \$10만 이상인 투자기업은 심사를 통해 입주 가능하다.

① IKP 시설 현황

건물 전경



로비 및 카페테리아



회의실(80석)



임대 사무실(5인)



임대사무실(2인)



비즈니스라운지



* 출처 : Invest KOREA 홈페이지 / 입주사무실 규모 : 21.82 m² ~ 32.4 m²(2인실), 50.24 m²(5인실) 상황에 따라 크기 및 입주가능 공간은 변할 수 있다.

② IKP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

| 구분 | 주요내용 |
|------|--|
| 선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기업 : 최소 투자(신고)금액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주 조건 등을 협의 후 내부 심사 * 해외무역관 및 외국인투자유치 전담PM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 계약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기업 : 2년, 전략투자유치 분야는 추가연장이 가능함 |
| 임대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000원/m²(부가가치세 포함), 입주보증금 : 6개월 임대료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한 사무실 및 비즈니스센터 활용지원 입주 후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

③ 신청 절차



④ IKP 입주 상담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전화상담 : 02-3497-1000, 이메일 : ikp@kotra.or.kr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지원

① 사업개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잠재투자가를 대상으로 국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재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상담회, 권역별 외투기업 채용설명회, 외투기업 채용전용관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채용을 지원합니다.

② 대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잠재투자가

③ 지원내용

| 사업명 | 주요내용 | 개최주기 |
|----------------|---|-------|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난 해소, 국내 구직자의 취업기회 제공 및 외투기업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 연 1회 |
|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상담회 | 외국인투자기업-구직자 간 1:1 심층면접을 통한 실질적인 채용지원 | 연 1회 |
| 권역별 외투기업 채용설명회 | 지역거점대학교 순회 외투기업 채용설명회 진행 | 연 10회 |
| 외투기업 채용전용관 | 온라인 수시채용관에 외투기업 채용공고를 업로드하여 구인수요에 대한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http://www.jobkorea.co.kr/Theme/kotra | 상시 |

④ 참가비 : 무료

⑤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jobfairfic.org 또는 공식 메일(jf@kotra.or.kr)을 통해 신청

⑥ 문의처

Invest KOREA 외투기업채용지원팀
02-3460-7876, jf@kotra.or.kr

출입국지원 레드카펫 서비스

① 사업 개요

방한투자자의 국내 체재기간 중 필요한 제반 사항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해 드립니다.

②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자]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자로서 중앙정부부처, KOTRA 해외무역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주한 외국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사

③ 지원 내용

| 구분 | 세부내역 | 기본 | 프리미엄 |
|--------|--------------------|-----|------|
| 입국수속지원 | 게이트 픽업 및 CIQ 안내 | ○ | ○ |
| | 인천공항 ▶ 호텔 이동 | ○ | ○ |
| 차량지원 | 체재기간 전체 | - | ○ |
| | | | |
| PM수행 | - | 필요시 | ○ |
| 투자상담주선 | 정부유관기관 업계 고위인사 면담 | - | ○ |
| 산업시찰 | - | - | 필요시 |
| 오·만찬제공 | - | - | 필요시 |
| 공항영송지원 | 호텔 ▶ 인천공항 이동 | - | ○ |
| | 김포공항/서울역 ▶ 인천공항 이동 | - | ○ |

④ 참가비 : 무료

⑤ 선정기준

- 고도기술 보유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 대규모 고용창출 예상기업 등 적극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기업
 - MOU, 투자신고, 입지(공장)확보, M&A 계약체결 등 한국 내 투자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외국기업
- * 단, 한국과 이미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한 정기 방한 투자가 또는 특정 민간기업만 방문하는 투자는 제외
- *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투자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급(가급적) 이상으로 한정

⑥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투자가 방한 지원

⑦ 문의처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02-3460-7827 / hkchoi@kotra.or.kr



Practice 사업운영

- 조세제도
- 통관 및 자본재 도입
- 인사·노무
- 지식재산권
- 외국인투자유치부즈만
- 해산 및 청산

조세제도

- 국세
- 지방세
- 이전가격세제
- 과소자본과세제도
- 조세조약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경우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내국세가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 등 특수 관계인과의 국제거래관련 이전가격세제와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주요세금의 종류



국세

01.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사·재단법인 등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고대상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②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x 20%)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 x 22%) |
| 3천억 원 초과 | 655억 8천만 원 + (3,000억 원 초과금액 x 25%) |

→ 법인세 납부 시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0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총매출액 x 세율)에서 매입세액(총매입액 x 세율)을 차감하는 형태로 과세된다.

② 사업연도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한다. 단, 예정신고기간이 있어 분기별 신고 의무가 있다.

| | 1기 | | 2기 | |
|-----------|---------------|---------------|---------------|----------------|
| 대상기간 | 01.01 - 03.31 | 04.01 - 06.30 | 07.01 - 09.30 | 10.01 - 12.31 |
| 신고 및 납부기간 | 04.01 - 04.25 | 07.01 - 07.25 | 10.01 - 10.25 | 익년 01.01-01.25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국내매출 | 10% |
|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등 | 0% |

IN DETAIL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매출액의 1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부동산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발급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여된다.

03. 근로소득세 (근로자)

근로소득세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여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된다.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근로로 받은 대가(급여, 상여)를 간 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후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매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달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전년도에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한다.

② 신고기한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2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582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60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60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 7,460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 원 초과 | 3억 8,46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 소득세 납부시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IN DETAIL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내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된 것 제외)
위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상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납세소득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들은 납세조항에 의한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 5%를 허용하고 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0조

04. 양도소득세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매도, 교환 혹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된다. 이 책에서는 외국투자가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다루기로 한다. 양도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가도 있다.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②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율

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 과세표준의 30%
-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6천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25%) |

㉕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중소기업의 주식 등 : 과세표준의 10%
-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 과세표준의 20%

IN DETAIL

대주주의 범위

- 2020.3.31.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 원 이상
- 2021.3.31.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0억 원 이상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05.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양도자이며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②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비상장주식의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③ 세율

증권거래세율(비상장주식)은 0.43%이다.



국세청 업무 상담

- 국세청 일반상담 : 126 (평일) 09:00-18:00
- 영문상담 : 1588-0560

지방세

01.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 세목 |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 납부기간·납부기한 |
|-------|--|---|
| 취득세 |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함 | • 취득일부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 | • 취득 외 각종등기·등록 등에 부과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 •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등록 전까지 •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까지 |
| 지방교육세 | • 지방교육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함 | •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승용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
| 주민세 | •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 • 균등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 재산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지방소득세 | •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 소득세로 구분함 | •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양도·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재산세 |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 •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임 |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 자동차세 | •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 •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름 | • 정기분 : 제1기(6.16~6.30) / 제2기(12.16~12.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 시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분할납부(3, 6, 9, 12월) |

* 출처 : 2019 지방세 길라잡이,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세율은 부록 참고

02. 감면 대상

① 지방조례에 의한 감면

㉓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지방세 감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5년간 감면할 수 있다.

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에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

㉕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

| 규정 | 주요내용 | 세목(감면율%)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 제45조의2 |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100 | | 100 |
| 제46조제①항 | 기업부설연구소 (중견기업)감면 (대기업 과밀억제권 내 제외) | 35 | | 35 |
| 제46조제②항 | 기업부설연구소 (대기업 과밀억제권 외)감면 | 35 | | 35 |
| 제46조제③항 | 기업부설연구소 | 60 | | 50 |
| 제58조제①항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 50 | | 50 |
| 제58조제②항 |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감면 | 중과제외 | | 중과제외 |
| 제58조제③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 50 | | 50(3년) |
| 제58조제④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37.5 | | 37.5 |
| 제58조의2제①항 |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감면 (중천취득세 감면을 1년 유예) | 35 | | 37.5 |

| 규정 | 주요내용 | 세목(감면율%)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 제58조의2제②항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 50 | | 37.5 |
|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 75 | 100 | 100/50 |
| 제71조제①항 |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 35 | | 35 |
| 제71조제②항 | 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 | 50 | | 35 |
| 제75조의2제①항1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 50 | | 50 |
| 제75조의2제①항2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 50 | | 50 |
| 제75조의2제①항3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 50 | | 50 |
| 제75조의2제①항4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 50 | | 50 |
| 제75조의3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 50 | | 50 |
| 제78조제④항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신축) | 50 | | 35-75 |
| 제78조제④항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대수선) | 25 | | |
| 제79조제①,②항 | 법인 지방이전 감면 | 100 | 100 | 100/50 |
| 제80조제①항 | 공장 지방이전 감면 | 100 | | 100/50 |

INFORMATION

지방세 ONE CALL 상담센터

- 전화번호 : 1577-5700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부부서로 연결)
- 홈페이지 : www.wetax.go.kr

이전 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는 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01. 정상가격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다음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
|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④ 이익분할방법 |
| ② 재판매가격방법 |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
| ③ 원가간산방법 | ⑥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02.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부과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IN DETAIL

국제거래 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주의점

①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불성실 과태료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서 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국외 특수 관계인별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 2월 7일 이전분 :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①항

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자료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조 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증명서, 국외 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

※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①항

과소자본 과세제도

과소자본이란 출자와 차입의 과실에 대한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조세부담을 덜고자 자금조달 시 인위적으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한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한다.

01. 과소자본의 개념

법인소득의 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으로 공제되지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주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 시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출자 대신 차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차입금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부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과소자본과세제도(Thin Capitalization Rule : Thin-Cap)이라 한다.

02. 과소자본세제 적용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IN DETAIL

국외지배주주지급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국의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참조

조세조약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세조약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법 이론에 따라 국내세법과의 관계가 설정되며, 아래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진다.

01. 조세조약의 특성 및 주요기능

대한민국의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국내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를 그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

02. 조세조약의 지위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충돌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하지만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상 규정 없이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할 수 없고 국내세법에 서 정한 조세부담액 이상으로 다른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한 조세부담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INFORMATION

조세조약 체결국가 (93개국)

가봉공화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왕국,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다루살람,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세르비아공화국,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공화국,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케냐공화국, 콜롬비아공화국,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공화국,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공화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공화국,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국가별 조세조약 내용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유의사항 : 조세조약은 개정사항이 본문에 반영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반영되므로 조세조약을 꼭 끝까지 확인해서 개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제한세율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원천징수세율)

| 계약국가 | 제한세율 | | |
|----------|------------------------|---|-----------------------------------|
| | 이자 | 배당 | 사용료 |
| 가봉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10% |
| 그리스 | 8%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10% |
| 남아프리카공화국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10% |
| 네덜란드 | 7년 초과 : 10% / 기타 : 15%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기타 : 10% / 저작권 : 15% |
| 네팔 | 10% | 25%이상 법인 : 5%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5% |
| 노르웨이 | 15% | 15% | 기타 : 10% / 저작권 : 15% |
| 뉴질랜드 | 10% | 15% | 10% |
| 덴마크 | 15% | 15% | 산업적투자 : 10% / 기타 : 15% |
| 독일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장비사용 : 2% / 기타 : 10% |
| 라오스 | 10%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5% |
| 라트비아 | 10% | 10%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산업적투자 : 5% / 기타 : 10% |
| 러시아 | 면제 | 30%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5% |
| 루마니아 | 10% | 25%이상 법인 : 7% / 기타 : 10% | 특허권등 : 7% / 기타 : 10% 수수료 : 10% |
| 룩셈부르크 | 은행 : 5% / 기타 : 10%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산업상정보 : 5% / 기타 : 10% |
| 리투아니아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산업상정보 : 5% / 기타 : 10% |
| 말레이시아 | 15%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기타 : 10% / 저작권 : 15%, 10% |
| 멕시코 | 은행 : 5% / 기타 : 15% | 10%이상 법인 : 0% / 기타 : 15% | 사용료 : 10% / 기타 : 15% |
| 모로코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저작권 등 : 5% / 기타 : 10% |
| 몰타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0% |
| 몽골 | 5% | 5% | 10% |
| 미국 | 12%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저작권 : 10% / 기타 : 15% |
| 미얀마 | 10% | 10% | 정보대가 : 10% / 기타 : 15% |
| 바레인 | 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10% |
| 방글라데시 | 10%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베네수엘라 | 은행 : 5% / 일반 : 10% | 10%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장비대가 : 5% / 기타 : 10% |
| 베트남 | 10% | 10% | 특허권 등 : 5% / 기타 : 15% |
| 벨라루스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5% |
| 벨기에 | 10% | 15% | 10% |
| 불가리아 | 10% | 1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5% |
| 브라질 | 7년 차관 : 10% / 기타 : 15% | 10% | 상표권 : 25% / 기타 : 10% |
| 브루나이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10% |

| 계약국가 | 제한세율 | | |
|-----------|------------------------|-----------------------------|-----------------------|
| | 이자 | 배당 | 사용료 |
| 조지아 | 10% | 10%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10% |
| 체코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10% |
| 카자흐스탄 | 10% | 10%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산업적장비 : 2% / 기타 : 10% |
| 캐나다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10% |
| 쿠웨이트 | 5% | 5% | 15% |
| 케냐 | 12% | 25%이상 법인 : 8% / 기타 : 10% | 10% |
| 타지키스탄 | 8%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10% |
| 터키 | 2년초과 : 10% / 기타 : 15% | 25% 이상 법인 : 15% / 기타 : 20% | 10% |
| 튀니지 | 12% | 15% | 15% |
| 파키스탄 | 12.5% | 20%이상 법인 : 10% / 기타 : 12.5% | 10% |
| 페루 | 15%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폴란드 | 10% | 10%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5% |
| 피지 | 10%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필리핀 | 공모채 : 10% / 기타 : 15%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25% | 10%, 15% |
| 호주 | 15% | 15% | 15% |
| 사우디아라비아 | 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장비사용 : 5% / 기타 : 10% |
| 세르비아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저작권 : 5% / 기타 : 10% |
| 스리랑카 | 10%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스위스 | 은행 : 5% / 기타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5% |
| 스웨덴 | 7년 차관 : 10% / 기타 : 15%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기타 : 10% / 저작권 : 15% |
| 스페인 | 10%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슬로바키아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저작권 : 0% / 기타 : 10% |
| 슬로베니아 | 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5% |
| 싱가폴 | 10%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5% |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10% | 10%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0% |
| 아이슬란드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10% |
| 아일랜드 | 0%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0% |
| 아제르바이잔 | 10% | 7% | 산업적투자 : 5% / 기타 : 10% |
| 알바니아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10% |
| 알제리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장비사용 : 2% / 기타 : 10% |
| 에스토니아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장비사용 : 5% / 기타 : 10% |
| 에티오피아 | 7.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8% | 5% |

| 계약국가 | 제한세율 | | |
|---------|----------------------------------|--------------------------------|---------------------------------------|
| | 이자 | 배당 | 사용료 |
| 에라도르 | 12% | 10%이 법인 : 5% / 기타 : 10% | 장비사용 : 5% / 기타 : 12% |
| 영국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장비사용 : 2% / 기타 : 10% |
| 오만 | 5% | 10%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8% |
| 오스트리아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장비사용 : 2% / 기타 : 10% |
| 요르단 | 10% | 10% | 10% |
| 우루과이 | 10% | 20%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10% |
| 우즈베키스탄 | 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장비대가가 : 2% / 기타 : 5% |
| 우크라이나 | 5% | 20%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5% |
| 이스라엘 | 은행 : 7.5% / 기타 : 10% | 10%이상 법인 : 5%, 10% 기타 : 15% | 장비사용 : 2% / 기타 : 5% |
| 이집트 | 3년 초과 : 10% / 기타 : 15%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5% |
| 이탈리아 | 10%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인도 | 10% | 15% | 10% |
| 인도네시아 | 10%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5% |
| 일본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10% |
| 중국 | 1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10% |
| 칠레 | 은행 : 4% / 거래소채권 : 5% 기타 : 1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장비대가가 : 2% / 기타 : 10% |
| 카타르 | 10% | 10% | 5% |
| 콜롬비아 | 10% | 20%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10% |
| 크로아티아 | 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0% |
| 키르기스스탄 | 10% | 25% 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5%, 10% |
| 태국 | 은행 : 10% / 기타 : 15% | 10% | 소프트웨어 : 5% / 특허권 : 10% 산업적장비 : 15% |
| 투르크메니스탄 | 10% | 10% | 10% |
| 파나마 | 5%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5% | 장비사용 : 3% / 기타 : 10% |
| 파푸아뉴기니 | 10% | 15% | 10% |
| 포르투갈 | 15%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프랑스 | 10% |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핀란드 | 10%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헝가리 | 0% | 25%이상 법인 : 5% / 기타 : 10% | 0% |
| 홍콩 | 10% | 25%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 10% |

*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www.nts.go.kr 국세정보-조세조약)
 * 대만, 마카오는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이다.
 * 미국, 필리핀, 남아공은 주인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접대비 중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한도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

01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수입금액 x 적용률

| 수입금액 | 적용률 |
|-----------------------|-------------------------------|
| 100억 원 이하 | 총 수입금액 x 0.3% |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100억 원 초과금액 x 0.2%) |
| 500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00억 원 초과금액 x 0.03%) |

접대비 증빙 : 1회 지출 접대비 중 1만 원을 초과 시 세무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신용카드(임직원 기명식 법인카드 포함) 매출전표 등이 적격증빙이다. 현금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1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경조사비의 경우 1회 지출액 20만 원 한도에서 청첩장 등이 적격증빙이 된다.

Q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신고·납부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① 지급금액 x 10%
- ② (수입금액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x 20%

Q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는 제3자에게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되나?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을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 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Q 국내사업장이 지배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였을 경우에 과소자본과세의 적용을 받는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과소자본과세에서 제외된다.

CORPORATE BUSINESS

Practice 사업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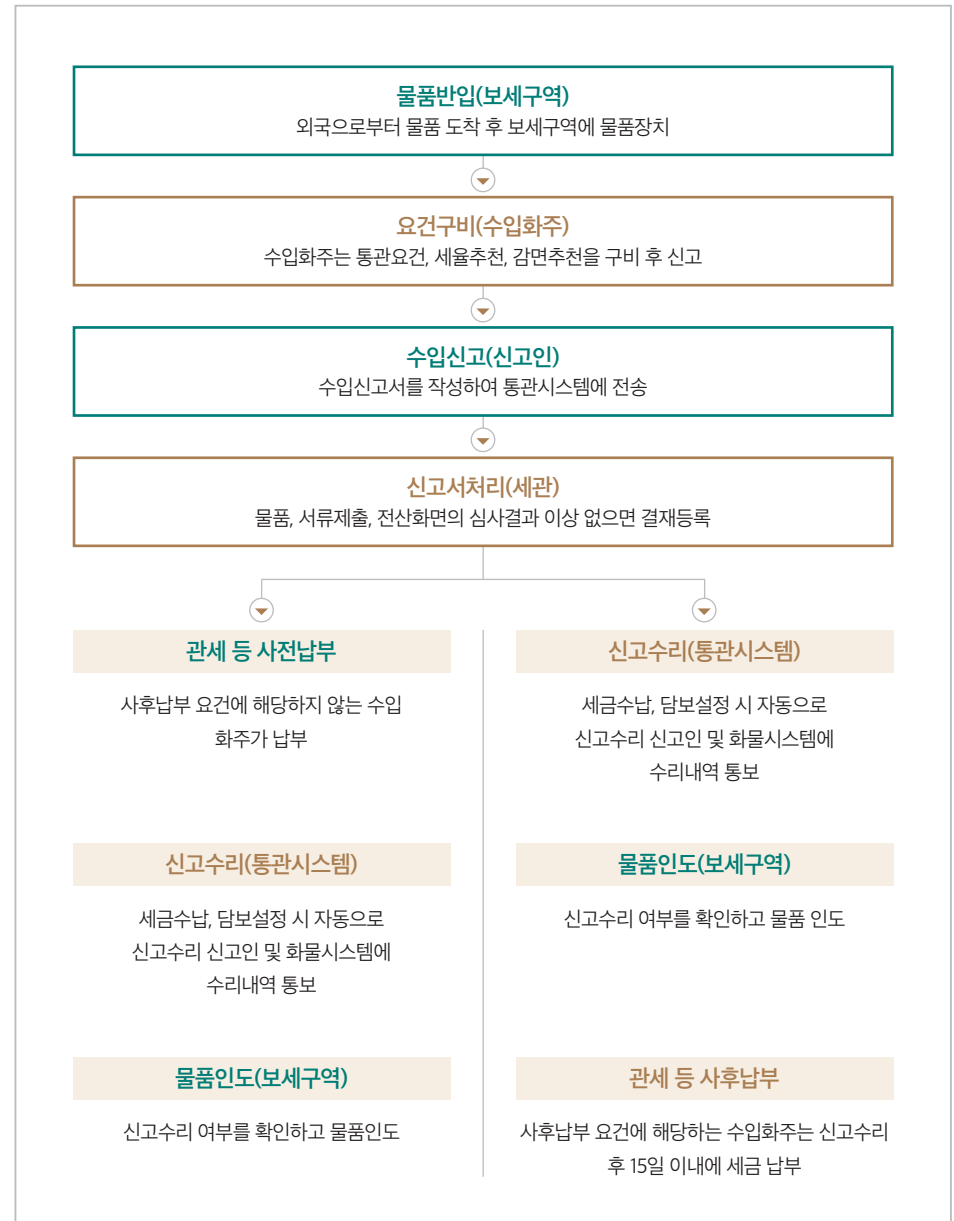
PART 2

통관 및 자본재 도입

통관
관세납부와 환급
자본재 도입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통관은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편 수출통관은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 수입통관 절차



통관

01. 통관절차

① 수입통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관련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으나,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수입신고 시기 : 선박(항공기)의 출항 전, 입항 전,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다.

② 수입신고서류

수입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한다. 다만, 의뢰받은 신고인은 세관에서 통관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된다.

*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③ 수입신고 처리

수입신고서는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수리된다. 다만,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수입물품검사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비용은 수입업체별 법규 준수도, 검사적발 실적,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검사대상물품에 따라 발체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에 의할 수 있다. 수입물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한다.

⑤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

- 송품장(INVOICE).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 신고 시 제출)
-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 선하증권(B/L)부분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부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검사·검역·허가·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전산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 관세감면(분납)
- 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 합의를세율적용승인(신청)서
-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INFORMATION

원산지 기준을 및 관세율 검색 방법

(FTA 협정국가별 원산지 기준을)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

<http://www.customs.go.kr>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 HS코드 검색

(협정국가별 HS 코드 관세율)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

<http://www.customs.go.kr>

FTA자료실 ▶ 협정별 세율정보 ▶ HS코드 검색

02. 인터넷 통관포탈 (유니패스)

유니패스(UNI·PASS)는 개인과 기업이 수출 또는 수입할 때 필요한 세관신고, 세금납부, 요건신청 등 모든 통관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유니패스 : unipass.customs.go.kr

① 주요 서비스

유니패스의 주요 서비스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정보조회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부여가 있다.

| 서비스 | 내용 |
|----------|---|
| 전자신고 |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등 신고업무를 수행 후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통관서류 출력도 가능하다. |
| 전자납부 | 수입신고 후 관세 등 세금납부를 할 수 있으며 처리내역의 조회가 가능하다. |
| 정보조회 | 관세행정 업무에 필요한 통관정보, 법규준수도, 통관부호 등 조회가 가능하다. |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주고 이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

② 신청절차

유니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공인인증 기관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취득한 후, 유니패스의 사용자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하면 세관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후 이용승인을 한다.

※ 관련규정 : 「국가관세통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25, 2018.7.18.)

INFORMATION

유니패스 업무 상담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

• 전화 : 1544-1285

(유니패스 전산업무(수출입통관, 화물, 환급 등)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이용안내)

관세행정 업무

• 전화 : 125 (일반관세상담 : 20, 외국인 : 40)

(관세업무, 품목분류 등 업무 전반, 관세관련 법령 등 제도 안내)

③ 이용방법

유니패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화면에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웹화면 입력방식과 신청인의 PC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건을 일괄 유니패스로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신청 건이 많은 경우 활용도가 높다.

사용 가능 웹브라우저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파이어폭스(FireFox)

업무처리절차



관세납부와 환급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 산업보호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 환급제도가 있다.

01. 관세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로서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 과세관청인 세관이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는 부과지도 있다. 관세는 금융기관(국고수납)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전자납부서를 조회하여 이체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INFORMATION

신용카드결제 문의처: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 전화: 1577-5500
<http://cardotax.or.kr>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

02. 관세감면

관세감면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하여 세금을 조건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세와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세로 구분된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과 국가 간 다자간 협약과 양자협약에 의해서도 감면될 수 있다.

03.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징수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때 다시 수출자 혹은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때 원재료의 가공 및 수출은 원재료 수입으로부터 2년 내 이루어져야하며 환급신청 기한은 수출 시점으로부터 2년이다.

자본재 도입

외국투자자가 도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거나 현물출자를 위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를 검토·확인한 후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본재 도입절차



01.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외국인투자 신고 후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자본재 도입에 따른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토·확인 대상 자본재는 아래와 같다.

-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 자본재
- 외국인투자자가 출자(출연)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 자본재의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8호

02. 확인신청 기한

자본재 등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03. 현물출자 완료 확인

출자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는 KOTRA 파견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 확인을 받은 후에 회사설립 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한다.

★ 필요서류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시

- 신청서 3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 :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
 - 물품매도 계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3조

현물출자 완료 확인 시

- 신청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 :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사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 시 생략 가능)
-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제①항 및 제②항

CORPORATE
BUSINESSPractice
사업운영PART
3

인사 · 노무

- 근로계약서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가
- 4대 보험
- 퇴직급여
- 해고
- 취업규칙
- 모성보호
- 일·가정 양립 지원
- 안전과 보건
- 비정규직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집단적 노사관계

유능한 인력의 채용과 원만한 노사관계는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의 관건이다.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법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근로자를 채용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해고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4대보험, 퇴직급여 등을 보장하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개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01. 표시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로 장소, 업무, 휴가, 퇴직금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02. 수습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

※ 관련규정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IN DETAIL

주의사항(채용 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개정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채용 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면 아니 된다. (2019.7.17. 시행)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고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7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다.

01.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02. 지급시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주 이상 귀향)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3.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01. 연장 근로의 한도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1주간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의 기업,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위와 같이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02.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03. 유연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업무의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기간별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기간 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 |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 |
| 보상 휴가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방식 |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58조

휴일 및 휴가

01. 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02. 공휴일

공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2018년 6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30 ~ 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1월 1일, 5 ~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03. 법정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해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4대 보험

4대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요율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 근로자 | 보수총액의 0.8% | 없음 | 기준소득월액의 4.5% | 표준보수월액의 3.335% |
| 사용자 | 보수총액의 0.8% | 업종별 상이 | 기준소득월액의 4.5% | 표준보수월액의 3.335%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10.25%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종업원 수에 따라 사업자가 보수총액의 0.25~0.85%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참조

IN DETAIL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

외국인근로자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외국인은 일정요건 충족 시 가입제외 신청 가능)과 산재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체류자격 및 국적에 따라 당면가입 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적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다.

퇴직급여

01. 퇴직

① 금품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증명서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02. 퇴직급여제도

① 종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적립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②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③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말한다.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없이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용자는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근속연수)을 곱한 값으로 한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IN DETAIL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제11조

해고

01. 해고의 정당성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① 징계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어 징계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를 말한다. 징계목적, 사업성격, 근로자의 업무, 비위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② 경영상 해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요건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 근로자 측에 50일 전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다.

02. 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3.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04. 해고시기의 제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된다.

취업규칙

0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02.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03. 취업규칙의 변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4.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모성보호

01.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0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03.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일·가정 양립지원

01.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3

안전과 보건

0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한 경우 혹은 그 작업내용 변경 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0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를 제외한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01. 기간제 근로자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기간제 근로자 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하여 차별할 수 없다.

02.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업 사용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파견 대상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1. 근로자 보호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2. 조치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6장제2조 (2019.7.16. 시행)

집단적 노사관계

0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그 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총연합단체를 정점으로 하여 동종 산업의 단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이다.

02.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통해 「헌법」 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노동조합 가입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노조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등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 조직을 지배·개입·원조하는 등의 행위, 사용자 규정위반사항을 신고·증언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 관련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03. 노동위원회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위원회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협조요청권과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있다.

※ 관련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의2, 제22조~제26조

04. 노사협의제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

INFORMATION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1.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6조

2. 국가유공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86조

참고자료 「외국인투자기업 노사실무 2020」 (KOTRA)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1 직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해고가 어려운 바, 직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어 자질검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02 2021년 최저임금 산정 시 209시간의 근거는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1년 월 평균 주간은 4.345주 (365일 ÷ 7일 ÷ 12월)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휴 8시간 포함하면 주당 48시간 근무로 계산할 수 있다. 월 평균 주간에 주 48시간을 곱하면 208.56, 즉 209시간으로 산정된다. (4.345 X 48 = 208.56)

Q 03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일 7시간씩 3일간 21시간을 연장근로하였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Q 04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대표이사 등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부사장 등이더라도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고 회사 경영의 책임이 없이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05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

-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경우
- 체류자격이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Q 06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D-8 사증 소지자)인데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⑤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의하면 국내체류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07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 www.nps.or.kr)

-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019.5.1. 기준 18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스위스, 브라질, 페루
-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Q 08 해고예고 통보 시 법정 해고예고기간인 30일에서 5일이 부족할 경우 5일분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예고기간이 1일이라도 부족하면 전체법정기간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제도
- 특허청의 주요 서비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지식재산권 출원 국가이자 세계 5위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출원 국가로 특허 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나 국내에서는 산업재산권이 주류를 이룬다. 1999년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기관이자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특허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재산권만을 다루기로 한다.

01. 산업재산권 등록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 구분 | 정의 | 존속기간 |
|-----------|---|---|
| 특허원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 실용신안 등록원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15년) |
| 디자인 등록원부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장부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
| 상표원부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

02. 특허권

특허권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위하여 기술공개에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특허출원에 있어 최초 출원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출원 주요절차



①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기간의 준수, 증명서 첨부, 수수료 납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 하는 심사이다.

②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고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 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심사로서 정보공개에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한다.

④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⑤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한다.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특허 출원 방법

| 구분 | 전자출원 | | 서면출원 |
|------|---|--|------------------------------------|
| | 온라인 | 우편 | 방문 |
| 내용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송 |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우편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
| 접수처 |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특허청 특허고객 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
| 접수시간 | 월-토는 24시간 가능하며 그 이외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09:00-21:00까지 출원이 가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 | 09:00-18:00 (동절기, 토요일 09:00-13:00) |

INFORMATION

특허의 전자출원과 정보검색

1. 특허전자출원 "특허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전자출원 서비스로 출원부터 등록, 수수료 납부까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www.patent.go.kr · 고객센터 : 1544-8080

2.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KIPI)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특허검색 서비스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국내지식재산 정보와 해외특허 정보에 대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다.

www.kipris.or.kr

03. 실용신안권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고안이다. 따라서 실용신안이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후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04. 디자인권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모든 디자인에 대해 등록자가 향유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기 출원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출원을 희망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시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받아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다.

05. 상표권

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 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원할 시 10년마다 갱신등록 출원이 필요하다.

특허청의 주요 서비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정책이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된 현재, 한국의 특허청은 신뢰받는 심사, 심판 서비스 제공, 강한 특허 창출지원과 보호 강화, 우수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더해 관련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01.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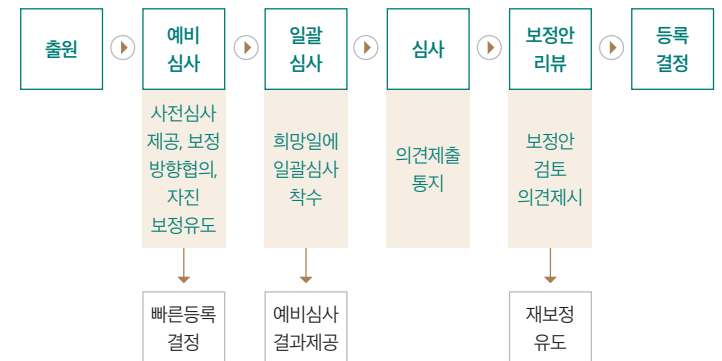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품질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로 구성된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히 특허권을 획득해 독점적 지위를 선점할 수도 있고, 늦은심사를 통해 충분한 사업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어 필요에 따라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우선심사 :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우선심사 출원의 처리기간 조정
- 일반심사 : 평균 심사소요기간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
- 늦은심사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을 위해 심사에 유연성 신장제도 도입

02. 특허심사 3.0

기존의 일방향(One-Way) 서비스에서 탈피, 특허심사 전 과정에 걸쳐 출원인과 심사관이 소통하여 고품질 특허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심사패러다임으로서 예비심사, 일괄심사, 보정안 리뷰의 단계가 있다.

심사단계별 주요제도



03. 예비심사

심사관의 사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예비심사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공식 심사 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특허권 부여가 가능하다.

04. 일괄심사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여러 출원을 동시에 심사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전략에 따라 제품 출시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인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적으로는 R&D 결과물의 사업화, 기술이전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

05. 보정안 리뷰

출원인이 통지받은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으로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이다. 출원인은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 등을 최종 보정서 제출 전에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특허결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를 도모할 수 있다.

06.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

특허청 홈페이지에 “Cyber Bulletin”을 개설하여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선출원제도로 인하여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도 방어목적의 출원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권을 확보할 의도는 없으나 타인의 특허권행사로 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Cyber Bulletin”에 그 기술내용을 게재하면 특허청에서 기술내용과 일자를 공증해주고 선행기술로 인정해줌으로써,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 인한 사업상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N DETAIL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경우

출원 절차를 밟아 특허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될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특허청은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조정비용이 무료이다.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장점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다.

| 효과 | 내용 |
|---------------------------|---|
| 시간과 비용 절약 | 여러 개의 소송(민·형사)이나 심판을 한 번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정신청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
|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 |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조정회의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양당사자가 WIN-WIN 할 수 있는 분쟁해결 | 소송과 달리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 |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
| 신속성, 비공개성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며, 조정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분쟁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유용하다. |

01. 신청자격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02. 신청대상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분쟁
- 직무발명 관련 분쟁
- 기술상 영업비밀 관련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료 및 취소여부, 권리확인심판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

INFORMATION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https://www.koipa.re.kr/adr/request_2.html
- 문의 : 1670-9779(전화), 02-2183-5897(팩스), lp.adr@korea.kr(이메일)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 외국인 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
- 고충처리기구와 홀닥터제도

1999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중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밀착형 투자 사후지원으로서, 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해결·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및 신규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

01. 위촉 및 기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와 처리,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및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02. 권한

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 현장방문 협조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 제③항, 제④항, 제⑤항, 제⑥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 3 제⑤항, 제⑥항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도

01. 고충처리기구

외국인투자자움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며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자움부즈만이다.
고충처리기구의 장(외국인투자자움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②항, 제③항

02. 홈닥터제도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투자기업별로 전담 홈닥터(고충처리전담요원)를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원분야: 금융, 노무, 세무/회계, 소비자, 인증/안전/환경, IT/자동차/기계, 출입국/비자 등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②항

03. 고충처리 절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의 고충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① 전문위원(홈닥터)의 전화, 현장방문, 온라인, 이메일 등으로 접수
- ② 담당 전문위원은 해당 고충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안 모색
- ③ 고충처리 결과는 해당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통보

* 출처: 2019 외국인투자자움부즈만 연차보고서(2020.9)

INFORMATION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접수 연락처

- 전화 : 02-3497-1824
- Fax : 02-3497-1699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7,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6층, 외투기업고충처리실

04. 외국인투자관련 규제정보 서비스

외국인투자자움부즈만 사무소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규제 입법과정에서 소외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인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입안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자움부즈만 포털(규제정보 서비스) : <http://ombudsman.kotra.or.kr>

서비스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
| 정부입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발의 규제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 전달 |
| 의원입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발의 규제 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의회 관계자 전달 |
| 규제개혁신문고 (기존규제 개선건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중에 있는 기존 규제 관련 건의사항 수렴, 정부소관부처 답변 전달 |

* 출처: 2019 외국인투자자움부즈만 연차보고서(2020.9)

INFORMATION

규제정보서비스 뉴스레터 신청

- 뉴스레터 신청 : 외국인투자자움부즈만 포털(공지사항 ▶ 메일링신청)에서 신청
- 문의 : 02-3497-1829, 1827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고충처리가 가능한 분야는 무엇인가?

01 기업경영과 투자가 생활환경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되나 기업 간의 사적분쟁, 소송 중으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 국제표준에 반하는 요구, 다른 기업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 출처: 2019 외국인투자자움부즈만 연차보고서(2020.9)

CORPORATE BUSINESS

Practice 사업운영

PART 6

해산 및 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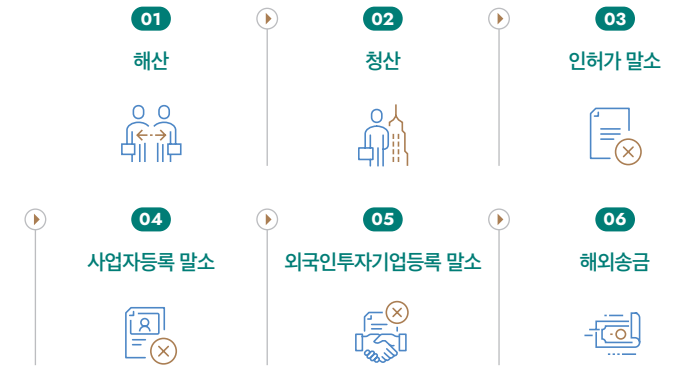
- 해산
- 청산
- 인허가 말소
- 사업자등록 말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 대외송금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해산, 청산,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격이 상실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채무를 청산한 후 잔여재산을 외국투자가 지분율만큼 배분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별도의 청산인을 두어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해산

법인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법원 해산 및 청산 등기,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의 단계를 거치며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법」 제535조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이 2개월이므로 2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는 없다.

해산 및 청산 절차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다.

주식회사 해산 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

★ 필요서류

• 해산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해산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 1544-0773→2→3

청산 (주식회사의 경우)

01. 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02.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03. 회사재산 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04.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05.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06.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07.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

08.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09.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

인허가 말소

영위 사업에 따라 영업등록, 영업신고, 영업인허가 등을 취득한 경우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처리기관은 당초 인허가를 발급하였던 시·군·구·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등록 말소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외송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①항 및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④항에 의하여 투자 잔여재산의 회수와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 필요서류

청산종결등기 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유한회사 청산종결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 1544-0773→2→3

사업자등록 말소 시

- 신고서 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휴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해산 또는 청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말소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담당 126→2→2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시

-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산종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반납

* 말소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외송금 시

-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8호의2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
- 공인회계사감사필 청산보고서 /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급)
- 지방세완납증명서(시군구 발행) / 예금잔액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산종결)
- 청산인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접수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이 사업주체인 개인사업자의 설립절차는
법인등기를 제외하고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사업자와 동일하다.

다만, 세제, 회계, 재무관리 측면에서 법인사업자와 차이가 있고,
D-8-3 또는 D-9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 내 체류가 가능하다.

만일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말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

Individual Business 개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 부동산 취득

INDIVIDUAL BUSINESS

개인사업자

PART 1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설립절차
- 주요세금
- 비자
- 폐업절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세율표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나 일정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01 적용법률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02 과세소득 | 「소득세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 당해 사업 연도에 증가된 순자산액에 대해 모두 과세 |
| 03 납세의무 |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부담 | 각 사업 연도에 대한 사업소득 및 청산소득 등에 대해 납세의무 부담 |
| 04 세율 | 6~45% | 10~25% |
| 05 회계연도 |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기간이 정해짐 | 사업 연도를 정관에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 06 장부작성 의무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만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음 | 모든 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음 |
| 07 권리의무 주체 | 개인사업자가 영리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사업이 곧 사업주의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 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무한책임을 부담함 | 출자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
| 08 재산이용 |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바로 사업주 개인의 이익에 해당됨 |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의 소유에 해당됨 |

설립절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설립 절차상의 차이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추게 되며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흐름도



0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2층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신고 시

[지분투자의 경우]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 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인투자자의 국적증명서(개인 : 여권)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장기차관의 경우]

-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 서식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 차관계약서(대주 : 투자자 본인)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자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후대반입 할 수 있으며, 후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INFORMATION

임시계좌 개설

국적증빙서류(외국투자자 해당국가 실체증명서 또는 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요구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03. 인허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IN DETAIL

인허가 항목 예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수입판매업, 식품제조업, 식품수입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 수입판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강식품 판매업, 건강식품 수입판매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주류수입업, 소규모맥주제조업, 직업소개업, 환전업 등

04.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시

- 신청서 1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여권사본, 외국인투자신고서, 인허가증(필요사업만) 등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05. 사업자 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됨에 따라 은행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06. 외국인투자 기업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수탁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INFORMATION

문의처

- 사업자등록 : 국세청 부가가치세 담당 126->2->2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 필요서류

사업자 통장개설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개설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시

- 신청서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㉔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요세금

01.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이 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열거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다.

02. 사업연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03. 신고기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사업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04. 세율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의 종류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2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582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60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60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 7,460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 원 초과 (세율) 3억 8,46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소득세 납부 시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부과된다.

비자

외국인투자로서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무역경영(D-9) 사증과 대한민국 개인 기업에 투자(D-8-3) 사증 등이 있다.

01. 무역경영(D-9) 사증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억 원 이상 외국자본을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개인사업자

★ 필요서류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 ①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㉓)
- ②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③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결핵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⑦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 ⑧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 중에서
 -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외화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휴대반입한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 ⑨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납세사실증명원(부가가치세, 소득세)
 - 세금계산서
- ⑩ 통장 및 통장 거래내역 사본
- ⑪ 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등
 -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 ⑫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⑬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제국 서류(필요시 징구)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02. 대한민국 개인 기업에 투자 (D-8-3) 사증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기업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되어야 한다. 공동사업자인 한국인 대표의 사업자금 역시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IN DETAIL

발급 요건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 일 것

★ 필요서류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 ①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㉓)
- ②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③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공동사업자 약정서 원본
- ⑦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입증서류
- ⑧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⑨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 ⑩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 중에서
 -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외화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휴대반입한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 ⑪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⑫ 사업자 통장 및 통장 거래내역 사본
- ⑬ 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등
 -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 ⑭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⑮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제국 서류(필요시 징구)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폐업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을 통하여 잔여 재산을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

01. 인허가 말소

영위사업에 따라 영업등록, 영업신고, 영업인허가 등을 취득한 경우 인허가 말소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처리기관은 당초 인허가를 발급받았던 시·군·구·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

02.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0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등록 말소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한다.

※ 외국인투자기업 말소시 필요서류는 [해산/청산 파트 참조 \(p.190\)](#)

04. 대외송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투자 잔여재산의 환수와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말소 시

- 신고서 1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휴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제처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휴폐업신고서
- 말소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담당(126-2-2)

대외송금 시

- 외국인투자등록말소확인서 / 공인회계사감사필 청산보고서 /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급) / 지방세완납증명서(시군구 발행) / 예금잔액증명서
- 송금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INDIVIDUAL BUSINESS

개인사업자

PART 2

부동산 취득

-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대금 반출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절차 및 규제는 한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계약 전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와 차이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거친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외로 반출이 자유로우며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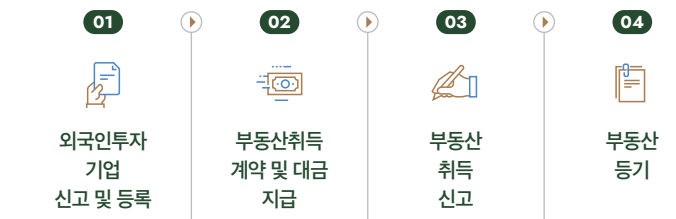
◆ 관련 법령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
| 대상 |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율 50%이상 소유한 내국 법인 외국정부, 국제경제 협력기구 등 |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영주권자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 비거주자 |
| 주요내용 |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시 | 부동산 취득신고: 비거주자가 부동산 관련 권리 (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 |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 외국환은행, KOTRA | 외국환은행 |
| 신고시점 | 계약체결일부 30일 이내 | 투자자금 반입이전 | 부동산취득 자금 인출 시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0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영리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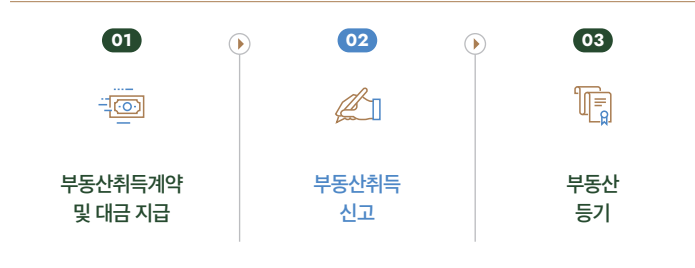
- ①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KOTRA에서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한다.
- ② 부동산 취득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한다.
- ③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 ④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신청서 /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 등기관리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02. 거주외국인 : 외국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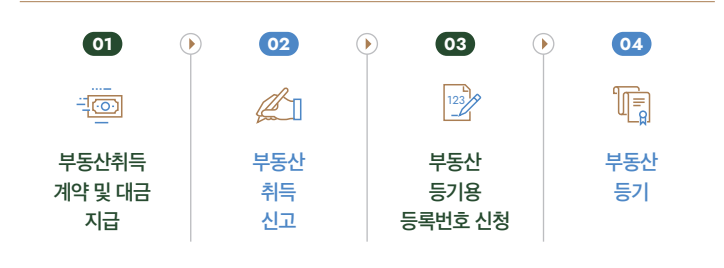
- ① 부동산취득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한다.
- ②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 ③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 필요서류

- 지정법인등기부등본(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감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03.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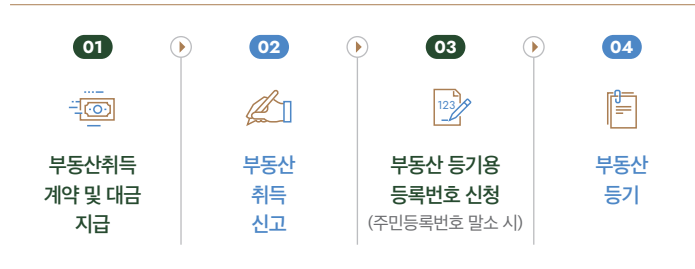
- ① 부동산취득계약을 체결한다.
- ② 부동산 관련 대금을 지불한다.
- ③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한다.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물권, 임차권)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서가 있어야 향후 부동산 처분대금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 ④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 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장이 부여한다. 제출서류는 개인의 경우 토지취득신고필증과 여권사본, 법인의 경우 토지취득신고필증과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대표자, 대표자 주소지 증명서류 등이 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 필요서류

- 지정법인등기부등본(개인: 외국인등록증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감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04.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거주와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 ① 부동산취득계약체결 후 대금을 지급한다.
- ②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 ③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통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이다.
- ④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 주소지증명서 : 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 증명서

★ 필요서류

-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감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부동산 매매대금 반출

01.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의 감액, 배당금, 청산대금 항목으로만 송금 가능하다. 지점의 경우 영업수익 또는 청산대금으로 송금 가능하다.

02. 거주외국인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송금가능하나 국내 발생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03. 비거주외국인

취득 시 신고한 자료로 매각대금의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Q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가?

01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이 있다. 대법원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Q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미보유)이 내에 있는 휴양 **02** 콘도미니엄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Q 우리 회사는 외국인투자비율이 40%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난해 **03** 토지 10,000㎡를 취득하였지만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외국투자자가 한국파트너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100%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되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의 무가 발생하는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의 신분이 외국인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Appendix 부록

-
-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 [별표3] 지방세 세율
 - [별표4] 수탁기관
 - [별표5] 범우법인
 - [별표6] 회계세무법인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 업종분류 | 업종명 | 소관부처 |
|-------|---|---------------|
| 61100 | 우편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4110 | 중앙은행 | 기획재정부 |
| 64912 |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 65301 | 개인공제업 | 관련주무부 |
| 65302 | 사업공제업 | 관련주무부 |
| 65303 | 연금업 | 관련주무부 |
| 66110 | 금융시장 관리업 | 금융위원회 |
| 66199 |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 84111 | 입법기관 | - |
| 84112 | 중앙 최고 집행기관 | - |
| 84114 |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 관련 주무부 |
| 84119 | 기타 일반 공공 행정 | 행정안전부 |
| 84120 |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행정안전부 |
| 84211 | 교육 행정 | 교육부 |
| 84212 | 문화 및 관광 행정 | 문화체육관광부 |
| 84213 | 환경 행정 | 환경부 |
| 84214 | 보건 및 복지 행정 | 보건복지부 |
| 84219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관련주무부 |
| 84221 | 노동 행정 | 고용노동부 |
| 84222 | 농림수산 행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84223 | 건설 및 운송 행정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 84224 | 우편 및 통신 행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84229 | 기타 산업진흥 행정 | 산업통상자원부 |
| 84310 | 외무 행정 | 외교부 |
| 84320 | 국방 행정 | 국방부 |
| 84401 | 법원 | - |
| 84402 | 검찰 | 법무부 |
| 84403 | 교도기관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 투자 가능 | 법무부 |
| 84404 | 경찰 | 행정안전부 |
| 84405 | 소방서 | 행정안전부 |

| 업종분류 | 업종명 | 소관부처 |
|-------|--|---------|
| 84409 |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 관련주무부 |
| 84500 | 사회보장 행정 | 보건복지부 |
| 85110 | 유아 교육기관 | 교육부 |
| 85120 | 초등학교 | 교육부 |
| 85211 | 중학교 | 교육부 |
| 85212 | 일반 고등학교 | 교육부 |
| 85221 |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 교육부 |
| 85222 |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 교육부 |
| 85229 |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 교육부 |
| 85301 | 전문대학 | 교육부 |
| 85302 | 대학교 | 교육부 |
| 85303 | 대학원 | 교육부 |
| 85410 | 특수학교 | 교육부 |
| 85630 | 사회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 교육부 |
| 856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 교육부 |
| 90131 | 공연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 |
| 90132 | 비공연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 |
| 94110 | 산업 단체 | 관련주무부 |
| 94120 | 전문가 단체 | 관련주무부 |
| 94200 | 노동조합 | 고용노동부 |
| 94911 | 불교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
| 94912 | 기독교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
| 94913 | 천주교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
| 94914 | 민족종교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
| 94919 | 기타 종교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
| 94920 | 정치 단체 | - |
| 94931 | 환경운동 단체 | 환경부 |
| 94939 | 기타 시민운동 단체 | 관련주무부 |
| 94990 |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관련주무부 |
| 99001 | 주한 외국공관 | 외교부 |
| 99009 |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외교부 |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 업종분류 | 업종명 | 허용기준 | 소관부처 |
|-------|-------------------------|--|---------|
| 01110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 01212 | 육우 사육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 20129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 산업통상자원부 |
| 35111 | 원자력 발전업 | <미개방> | 산업통상자원부 |
| 35112 | 수력 발전업 | | |
| 35113 | 화력 발전업 |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 |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 한전(자회사 포함)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 |
| 35119 | 기타 발전업 | | |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
| 35130 | 전기 판매업 |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함 ※ 전기 판매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에만 해당 다음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
| 38240 |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
| 46313 | 육류 도매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 50121 | 내항 여객 운송업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 해양수산부 |
| 50122 | 내항 화물 운송업 |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 해양수산부 |
| 51 | 국제항공 운송사업 | | |
| 51 | 국내항공 운송사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국토교통부 |
| 51 | 소형항공 운송사업 | | |
| 58121 | 신문 발행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
| 58122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
| 60100 | 라디오 방송업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
| 60210 | 지상파 방송업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

| 업종분류 | 업종명 | 허용기준 | 소관부처 |
|-------|--------------|---|---------------------------|
| |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 공급업은 「방송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①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 60221 | 프로그램 공급업 | | |
| 60222 | 유선방송업 |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0229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②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1210 | 유선통신업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기부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1220 | 무선 및 위성통신업 |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1299 |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3910 | 뉴스 제공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
| 64121 | 국내은행 | 「농협등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금융) 및 「수산업등조합법」에 의한 수협중앙회(금융)를 제외하고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

[별표3] 지방세 세율

| 세목 | 과세대상 | 세율 | |
|-------------|--|---|---|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일반세율 :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4.0%(4주택) 중과세율 : 2.8%, 4.4%, 8.0%, 8.4% 등 |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국세) | 부가가치세액의 21%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 1천분의 6 ~ 1천분의 42 | |
| | 양도소득 | 1천분의 6 ~ 1천분의 42, 1천분의 10~1천분의 70 | |
| | 법인소득 | 1천분의 10 ~ 1천분의 25 | |
| | 특별징수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 주민세 | 균등분 | 개인·법인 개인(1만 원 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 5만 원), 법인(5~50만 원) | |
|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
| | 종업원분 | 급여액 (50인 초과) | |
| 자동차세 | 소유분 | 승용 자동차 | 년 1cc당 80~200원 |
| | | 승합 자동차 | 화물자동차 |
|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 |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
| | 담배소비세 |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 20개비(1갑)당 1,007원 |
| 레저세 | 경륜, 경정, 경마, 전통 소싸움 | 발매금 총액의 10% |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시설분 | 건축물, 선박 | 재산가액의 0.04~0.12% |
| | 특정자원분 | 지하수, 발전용수 등 | 채수량 1㎡당 20원, 발전용수 10㎡당 2원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 20%, 30%, 50% | |
| 재산세 | 재산세 |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 0.1, 0.15, 0.25, 0.4% 건축물 0.25% 토지 종합 : 0.2, 0.3, 0.5% 별도 : 0.2, 0.3, 0.4% 분리 : 0.07%~4% |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주택 |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
| 등록면허세 | 등록 | 부동산 등기 |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
| | | 선박 등기 |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
| | | 차량의 등록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
| |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 원) |
| | 면허 | 각종 인허가 등 면허 |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출자증가(0.2) 4천 5백 원 ~ 6만 7천 5백 원 |

[별표4] 수탁기관

| 수탁기관 | 부서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
| 경남은행 | 외환사업부 | 055-290-8495 | [51316]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
| 광주은행 | 외환사업실 | 062-239-6555 | [61470]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 외환사업실) |
| 국민은행 | FI영업부 | 02-2073-8956 | [07331]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11층 |
| 기업은행 | 외국고객팀 | 02-2031-5630 | [04538]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을지로2가, IBK파이낸스타워)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외국고객팀) |
| 농협은행 | 외환팀 | 02-2131-1611 | [0314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4층(농협은행, 외환팀) |
| 뉴욕멜론은행 | 기업신탁부/업무부 | 02-6137-0360 | [073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번지 원아이에프씨 29층 (뉴욕멜론은행) |
| 대구은행 | 외환사업부 | 053-740-2946 | [42123]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외환사업부) |
| 도이치은행 | 자금관리업무부 | 02-724-4281 | [0318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층 (도이치은행) |
| 디비에스은행 | 대고객부 | 02-6322-2661 | [04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8층 (디비에스은행) |
| 미쓰이스 미토모은행 | 외환송금그룹 | 02-6364-7262 | [04539]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서관 12층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 미즈호은행 | GCBS팀 | 02-3782-8690 | [04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9층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
| 바덴뷔르템 베르크주립은행 | 오퍼레이션 | 02-6730-0142 | [04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
| 뱅크오브 아메리카(BOA) | 법인지원부 | 02-788-1760 | [04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센터 27층(뱅크오브아메리카) |
| 부산은행 | 외환사업부 | 051-661-4665 | [48400]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15층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
| 비엔피(BNP) 파리바은행 | 송금대부계 | 02-317-1929 | [04631]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24층 (BNP파리바은행) |
| 산업은행 | 무역금융실 | 02-787-7521 | [0724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 무역금융실) |
| 소시에테제네랄 (SG)은행 | 자금관리부 | 02-2195-7820 | [0315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D1 23층 (소시에테제네랄은행) |
| 수협 | 글로벌외환사업부 | 02-2240-2605 | [055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국제금융실) |

| 수탁기관 | 부서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
| 신한은행 | 외환투자전략부 | 02-2151-2872 | [04513]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9길 20 (신한은행, 외환투자전략부) |
| 아이엔지은행 | 업무부 | 02-317-1849 | [04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1층 (아이엔지은행) |
| 아마구찌은행 부산지점 | 업무팀 | 051-462-3281 | [48931]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4층 (아마구찌은행) |
| 엠유에프지은행 | 송금과 | 02-399-6413 | [0318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7층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 |
| 우리은행 | 글로벌투자지원센터 | 02-3789-1899 | [06611]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2층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
| 전북은행 | 외환업무팀 | 02-751-2489 | [073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 JB금융지주빌딩 3층 |
| 제이피모간체이스 | 기업자금관리업무부 | 02-758-5232 | [04516]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5 제이피모간프라자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
| 제주은행 | 자금부 | 064-720-0267 | [6319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
| 중국건설은행 | 운영부 | 02-6730-3611 | [04538]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4 (중국건설은행) |
| 중국공상은행 | 영업부 | 02-3788-6617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층 (중국공상은행) |
| 중국광대은행 | 운영부 | 02-3788-3790 | [0318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23층 (중국광대은행) |
| 중국교통은행 | 회계영업부 | 02-2022-6837 | [0452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교통은행 서울지점) |
| 중국은행 | 영업부 | 02-399-6699 | [0318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1층 (중국은행) |
|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 | 국내업무부 | 02-3700-9632 | [0315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1층(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외환송금업무부 | 02-3702-3393 | [031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금융운영센터) |
| 한국씨티은행 | 중앙기업업무센터 | 02-3455-2676 | [04521]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한국씨티은행) |
| 호주뉴질랜드은행 | 오퍼레이션 | 02-3700-3143 | [0315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2층(호주뉴질랜드은행) |
| 홍콩상하이(HSBC)은행 | 업무부 | 02-2004-0100 | [04511]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HSBC은행) |
| KEB하나은행 | 글로벌자본거래센터 | 02-2002-2325 | [04538]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KEB하나은행 명동사옥 지하1층 |

[별표5] 법무법인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변호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김장 법률 사무소 | 정경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 1,050 | 박상호 | 한국어 영어 |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은행, 외국인투자, 해외법무, 사모투자, 방송·통신, 기업 재무 | 02-3703-1181 |
| | | | | | | 외국인투자, 기업인수·합병, 공정거래, 대리점 및 가맹사업, 기업지배구조, 기업내부조사, 국제분쟁, 유럽기업 서비스(프랑스, 독일 등) | 02-3703-1261 |
| | | | | | | 사모투자, 기업인수·합병, 부동산,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공정거래, 유럽, 독일, 기업재무, 외국인투자 | 02-3703-1406 |
| | | | | | |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부동산, 독일, 방송·통신,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 게임·리조트·엔터테인먼트 | 02-3703-1409 |
| 이루네 | | | | | 한국어 영어 일본어 | 에너지, 기업인수·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스, 파이낸싱, 해외법무, 외국인투자 | 02-3703-1747 |
| | | | | | |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 자본시장, 기업재무, 외국인투자 | 02-3703-1956 |
| | | | | | | 일본,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 02-3703-1766 |
| | | | | | |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부동산·건설, 인사·노무, 독일, 유럽 | 02-3703-1153 |
| 최원탁 | | | | | 한국어 영어 중국어 | 중국, 외국인투자, 기업인수·합병, 인사·노무 | 02-3703-1925 |
| | | | | | | 베트남대사관 번역공증인증 출입국, 행정, 비자업무 투자상담, 법인설립, 자문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 02-725-3003 |
| 늘품 | 천성훈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4, 2층 | 8 | 김유진 | 영어 베트남어 | 외국인투자 및 법인설립 총괄 | |
| | | | | | | 이승욱 | 영어 |
| 대호 | 석동현 최수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91, 6층 | 18 | 석동현 | 영어 중국어 | 비자 취득 등 출입국 관련자문 | 02-568-5200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변호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대호 | 석동현 최수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91, 6층 | 18 | 신동욱 | 영어 | 자회사, 지사, JV설립, 외환거래 규정 자문, 외투기업 세제혜택 등 | 02-568-5200 |
| | | | | 임동번 | 일본어 | 세무 자문, 주식양수도 등 M&A 관련 자문, 경영지원서비스, 외투기업 경영 자문 | |
| 동북아 | 김신호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5, 서관 416호 | 9 | 김신호 | 중국어 | 한중간의 상호투자, 기업인수합병, 법률, 투자자문 | 02-596-8111 |
| | | | | 이경재 장윤석 | 영어 | 법률, 투자자문 | |
| (유) 랜드마크 | 김재훈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47, 21층 | 30 | 김재훈 | 영어 |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 02-533-7979 |
| | | | | 유형준 | 영어 |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 |
| | | | | 박호선 | 영어 |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 |
| | | | | 채준병 | 일본어 | 기업법무, 조세, 민사, 형사 | |
| | | | | 최우식 | 영어 | 기업법무, 조세, 민사, 형사, 노동 | |
| | | | | 최원우 | 영어 | 기업법무, 조세, 민사, 형사, 노동 | |
| (유) 로고스 | 양승국 김무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 (8, 14, 16층) | 115 | 조훈희 | 영어 | 기업법무, 조세, 민사, 형사, 노동 | 02-2188-1014 |
| | | | | 이소현 | 영어 |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 |
| | | | | 안완진 | 중국어 |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 |
| | | | | 주건화 | 중국어 |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 |
| | | | | 류두현 | 영어 | 해외사업, 합작투자 | |
| | | | | 변윤석 | 영어 | 외국인투자,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 |
| 린 | 임진석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10층 | 55 | 이한나 | 영어 | 국제거래, 해외사업, 국제중재 | 02-2188-2836 |
| | | | | 박정열 | 영어 |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해외사업 | 02-2188-2837 |
| | | | | 기문주 | 영어 | 의료법, 노동법 | 02-2188-1050 |
| | | | | 임형민 | 중국어 | 회사법, 중국기업에 의한 국내투자 | 02-2188-1025 |
| | | | | 한정애 | 일본어 | 회사법, 도산법, 일본기업의 국내 투자 | 02-2188-2831 02-3477-8500 |
| | | | | 임진석 | 영어 일본어 | 기업, 금융, 중재 | 02-3477-8500 |
| 린 | 임진석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10층 | 55 | 강인철 | 영어 | 국제분쟁 | 02-3477-6300 |
| | | | | 김학훈 | 영어 | M&A Investment, PEF, 공정거래 | 02-3477-8686 |
| | | | | 차선희 | 영어 | 금융, HR, 국제분쟁 | 02-3477-3003 |
| | | | | 박성준 | 영어 | 에너지, 인프라 | 02-3477-3003 |
| | | | | 이홍원 | 영어 | 기업투자, M&A, 금융, PEF |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변호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린 | 임진석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10층 | 55 | 윤현상 | 영어 | 금융 | 02-3477-8500 |
| | | | | Milosz Zurkowski | 영어 폴란드어 | Investment, 금융, 국제소송 중재, 도산, HR | |
| | | | | 조만구 | 영어 | 투자, M&A, Project Financing | |
| | | | | 김용갑 | 영어 일본어 |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 |
| 버리 | 김인중 이수정 | 부산 수영구 망미동 번영로 70번길 8 (수영동) 3, 4층 | 5 | 이수정 | 영어 일본어 | 법인설립, 재무, 분쟁조정 | 051-782-9226 |
| | | | | 김지영 | 영어 | | |
| (유)산우 | 임정혁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33 7층 허브원빌딩 | 14 | 문하영 | 프랑스어 | 총괄 | |
| 양현 | 김의재 최성준 김수창 최경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25층 | 45 | 김하진 | 영어 | 법률자문, 국내법인설립, JV, 해외투자, 인수·합병, 국제중재, 국제거래, 기업자문 | 02-584-5533 |
| | | | | 채연정 | 영어 | 외국인투자가 국내 법인, 지사 설립,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거래, M&A | 02-397-9840 |
| | | | | 임석진 | 영어 일본어 | 합작투자, 해외투자, M&A 국내기업 해외진출 | 02-397-9878 |
| | | | | 윤주혁 | 영어 | 기업자문 일반, M&A, 노동 소송 및 중재 | 02-397-9842 |
| (유)원 | 강금실 윤기원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11층 | 53 | 이광수 | 영어 | 인수 합병, 파산, 회생 증권발행, 기업공개 | 02-3019-2895 |
| | | | | 박효준 | 영어 | 기업자문 일반, M&A, 국제투자 및 거래, EPC 프로젝트, 국제소송 및 중재, 국제통상, 컴플라이언스 | 02-3019-5455 |
| | | | | 천창현 | 영어 | 기업법무(기업자문 일반, 기업의 인수, 합병, 파산, 회생), 건설 부동산(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 | 02-3019-2894 |
| | | | | 최현오 | 영어 | 금융, 증권(구조회금융, 파생상품), 국제법무, 건설 부동산(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 | 02-3019-2893 |
| | | | | 이영주 | 영어 | 기업법무(회사설립, 투자자문, 계약서 검토), 국제법무 | 02-3019-5455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변호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유)올촌 | 강석훈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 395 | Moritz Winkler | 영어 독일어 | 해외, 유럽, 기업인수합병(M&A), 지적재산권, 노동, 국제소송 및 중재, 자동차, 중남미/남유럽 | 02-528-5483 |
| | | | | 강수구 | 영어 베트남어 | 기업법무 및 금융, 은행·금융일반, 해외, 베트남/동남아시아 | 02-528-5561 |
| | | | | 백윤재 | 영어 | 국제소송 및 중재, 기업법무및금융, 기업인수합병(M&A), 기업지배구조, 건설, 리스금융(항공기), 국제통상 | 02-528-5473 |
| | | | | 변용재 | 영어 중국어 | 기업법무 및 금융, 해외투자, 중국, 환경 | 02-528-5797 |
| | | | | 신동찬 | | 중동, 해외투자, 기업인수합병(M&A), 국제소송 및 중재, | 02-528-5356 |
| | | | | 이수정 | | 노동 | 02-528-5246 |
| | | | | 이승목 | 영어 | 지적재산권, 부정거래,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특허/실용신안, IP Risk Management(IP compliance), 지적재산권 조사/평가, 지적재산권 라이선스/거래, 해외 분쟁 매니지먼트 | 02-528-5942 |
| | | | | 이승범 | 영어 일본어 | 기업인수합병(M&A), 기업내부조사, 공정거래, 일본, 자동차 | 02-528-5091 |
| | | | | 이태혁 | 영어 |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해외투자(인도네시아 등), 금융일반, 펀드, PE | 02-528-5512 |
| | | | | 이형기 | 영어 프랑스어 | 기업인수합병(M&A),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보험, 금융기관 인허가 금융규제, 기업지배구조 | 02-528-5885 |
| | | | | 이홍배 | 영어 베트남어 | 해외투자, 베트남/동남아시아, 부동산 건설,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사업,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 +94-4-3837-8200 |
| | | | | 이화준 | 영어 러시아어 | 해외투자, 기업인수합병(M&A), 국제소송및중재, 환경에너지, 부동산, 러시아/CIS, 북한 | 02-528-5519 |
| | | | | 임민택 | 영어 아랍어 |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중동,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 사업, 해외,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 02-528-5406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변호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유)올촌 | 강석훈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 395 | 정세훈 | 영어 | 기업인수합병(M&A), 공정거래, 공정거래 분쟁, 방송통신, 의료계약 | 02-528-5923 |
| | | | | 조현철 | 영어 프랑스어 | M&A, 해외투자, 프랑스, 럭셔리 산업 | 02-528-5958 |
| | | | | 최용환 | 영어 일본어 | 국제조세, 조세쟁송 | 02-528-5709 |
| | | | | 최충인 | 영어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문화산업, 펀드·PE,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환경/에너지, 부동산자산,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해외 분쟁 | 02-528-5073 |
| 이공 | 허진민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 | 5 | 강두용 | | 국제거래 계약서 검토 및 법적위험관리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법률 검토(M&A, Escrow, Funding Agreement, Due Diligence Report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FDI, 외환관련업무(신고, 허가 등) 국내 및 해외 현지 법인설립 | |
| | | | | 허지민 | 영어 | 국제거래 계약서 검토 및 법적위험관리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법률 검토 (M&A, Escrow, Funding Agreement, Due Diligence Report 등) | 02-2038-3620 |
| | | | | 양홍석 | | 국내 및 해외현지 법인설립 | |
| | | | | 황영민 | |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법률검토 (M&A, Escrow, Funding Agreement, Due Diligence Report 등) | |
| 이후 | 이종건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20층 | 13 | 류권영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FDI, 외환관련업무(신고, 허가 등) | |
| | | | | 이종건 | 영어 중국어 |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인수합병 인수합병 (M&A), 국제거래,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 한중미 기업법무 | 010-7134-2198 |
| | | | | 류권영 | |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지적재산권, 저작권,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 한중미 기업법무 | 010-7143-0882 |
| | | | | 백은성 | 영어 |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인수합병(M&A), 국제거래,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 한중미 기업법무 | 010-3271-7740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변호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이후 | 이종건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20층 | 13 | 권낙현 | 영어 |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지적재산권, 저작권, 국제거래, 인수합병(M&A) | 010-3271-7740 |
| 인화 국제 | 황주환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8, 8층 (거제동, 나래타운빌딩) | 3 | 황주환 | 영어 | 각종 민·형사송무, 계약, 투자자문 | 051-503-0037 |
| | | | | 성현정 | | | |
| (유)지평 | 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60 KT&G 서대문타워 10층 | 243 | 정철 | 영어 | M&A, 기업법무일반, 해외투자, 에너지·자원·인프라, 중국, 미얀마 | 02-6200-1753 |
| | | | | 류혜정 | 영어 러시아어 | M&A, 에너지·자원·인프라, 기업법무일반, 해외투자, 국제건설, 공공계약, 러시아·중앙아시아 | 02-6200-1722 |
| | | | | 최정식 | 영어 중국어 | M&A, 인사·노무, 조세, 중국, 외국인투자, 국제중재, 해외소송 | 02-6200-1785 |
| | | | | 서준희 | 영어 일본어 | M&A, 기업법무일반, 바이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스포츠·레저, 신기술·신산업, 미얀마 | 02-6200-1763 |
| | | | | 제니 김 | 영어 | M&A, 외국인투자, 금융회사M&A·해외진출, 구조화금융, 인수금융, 공정거래 | 02-6200-1771 |
| | | | | 이훈 | 영어 | 외국인투자(외투법인 설립, 지분투자, 합작회사 등), 기업법무일반(노동포함), 에너지·자원·인프라, 국제건설 | 02-6200-1851 |
| | | | | 노충욱 | 영어 | M&A, 기업법무일반,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금융, 부동산금융·실물투자, 미국, 인도, 필리핀 | 02-6200-1793 |
| 이상희 | 영어 | 기업법무일반, 외국인투자, 노동법, 지식재산권(연구협약 포함), 국제건설, 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 | | | |
| 김옥림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M&A, 기업법무일반, 외국인투자, 중국 | 02-6200-1718 | | | | |
| 케이 앤피 | 김태진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 5 | 김태진 | 영어 | 법률자문, 민사, 형사 외국인 투자 및 법인설립 | 032-864-8300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변호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타임 | 이형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407호 | 3 | 이형우 | 영어 | 계약 및 세금 | 02-583-7203 |
| (유)화우 | 정진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 19, 22, 23, 34층 | 420 | 나승복 | 중국어 | 중국, 한/중 투자, IPO, M&A, 해외투자, 일반 기업자문, 외국인투자, 사모투자,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감독기관조사, 자본시장, 자산운용 등 | 02-6003-7137 |
| | | | | 김한철 | 러시아어 | 러시아·CIS, 유럽, M&A,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은행·금융지주회사, 일반기업자문 등 | 02-6003-7524 |
| | | | | 차지훈 | 영어 | 해외투자/아웃바운드 M&A, 프로젝트파이낸스, 중재 및 국제소송, 동남아시아 | 02-6182-8373 |
| | | | | 이승기 | 영어 | 유럽, 동남아시아, 러시아·CIS, M&A, 기업 지배구조, 도산·기업회생, 해외투자, 금융, 금융분쟁, 감독기관조사,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방송·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북한 등 | 02-6003-7519 |
| | | | | 김권희 | 영어 | 유럽, 동남아시아, 러시아·CIS, 일본, 중국,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국제무역통상, 일반기업자문, M&A, 구조화 금융,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등 | 02-6003-7566 |
| | | | | 이준우 | 영어 | 동남아시아, 한/베트남 투자, 재무, 조정, 일본, 중국, 러시아·CIS, 유럽, 금융, 사모투자,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프로젝트파이낸스,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일반기업자문 등 | 02-6003-7527 |
| | | | | 장황림 | 영어 | 동남아시아, 자산운용, M&A, 금융, 사모투자, 외국인투자, 보험, 비은행금융회사, 은행·금융지주회사, 일반 기업자문, 자본시장, 프로젝트파이낸스, 북한 등 | 02-6003-7594 |
| 정해왕 | 일본어 | 일본, 한/일 투자, JV, 상업소송, 해상, 항공, 일반기업자문 등 | 02-6003-7567 | | | |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변호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 |
|---------|----------------|---|----------|---------|-----------|--|--------------|-----|-------------|-------------------------------|---------------|
| (유)화우 | 정진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 19, 22, 23, 34층 | 420 | 홍동오 | 영어 | 지적재산권, 일본,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M&A, 은행·금융지주회사, 일반 기업자문 | 02-6003-7549 | | | | |
| | | | | 김원형 | 영어 | 일본, M&A, 일반기업자문, 외국인투자, 자본시장규제, 자산운용, 프로젝트파이낸스, 사모투자, 보험 등 | 02-6003-7531 | | | | |
| | | | | 강성운 | 영어 | IPO, 중국, 금융, 사모투자, 자본시장규제, 외국인투자,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항공, 동남아시아 등 | 02-6003-7591 | | | | |
| 화이트 앤케이 | 홍지훈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31층 | 5 | 홍지훈 | 영어 | 파이낸스, 구조화 금융 | 02-6138-8816 | | | | |
| | | | | 이동호 | 영어 | 인수합병, 사모펀드 | 02-6138-8811 | | | | |
| | | | | 정원선 | 영어 | 기업자문, 인수합병 | 02-6138-8812 | | | | |
| | | | | 박세라 | 영어 |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스 | 02-6138-8820 | | | | |
| | | | | 전새별 | 영어 | 상사·소송, 분쟁 | 02-6138-8817 | | | | |
| (유)한결 | 송두환 이경우 안병용 안식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 16층 | | 이제혁 | 영어 | 해외투자 및 M&A, 금융, 국제소송 및 중재, 외국인투자 | 02-3458-0980 | | | | |
| | | | | 박형준 | 영어 | 해외투자, 기업인수합병, 합작투자, 외국인투자 | 02-3458-0906 | | | | |
| | | | | 엄태진 | 영어 | 미국 등 해외시장진출, 정부조달 시장진출, 국제계약, 무역규제 | 02-3458-0921 | | | | |
| | | | | 정국철 | 중국어 | 외국법자문사(중국), 중국투자, 인수합병, 부동산투자, 지적재산권, 연예매니지먼트, 사모투자, 소송 및 중재 | 02-3458-9401 | | | | |
| | | | | 윤수인 | 영어 일본어 | 외국인투자,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국제거래, 국제소송 및 중재 | 02-3458-0983 | | | | |
| | | | | 윤상원 | 영어 | 해외투자 및 M&A, 금융, 합작투자, 외국인투자, 지적재산권 | 02-3458-0947 | | | | |
| | | | | 오펜스 | 송혜미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길 22, 4층 법률사무소 오펜스 | 4 | 송혜미 | 영어 | 지사설립절차대행,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및 소송업무 | 010-8277-2024 |
| | | | | | | | | 박현선 | 일본어 | | |
| | | | | | | | | 엄희애 | 중국어 프랑스어 | | |
| | | | | 정결 | 정성엽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4층 | 5 | 황세훈 | 영어 | 노무, 형사, 엔터테인먼트, 출입국, 외국인투자 | 02-318-2554 |
| 송심근 | 영어 | 법인설립,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컴플라이언스, 행정 | | | | | | | | | |

[별표6] 회계세무법인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회계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경남 | 나한수 |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50번길 93 한마빌딩 3층 세무법인 경남 | 5 | 윤선귀 | 영어 | 국내 기업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관리 및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 운영 회사 세무 관리 및 컨설팅 등 | 055-277-0113 |
| | | | | | | | |
| 광개도 종로지사 | 임미희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 파빌리온 213 | 6 | 임미희 | 영어 | 기장업무, 국내 회사설립보조, 세무감사에 대한 리스크 리뷰, 세무조사 대응 | 02-3288-3676 |
| | | | | | | | |
| 광장 리앤고 | 김준석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6층 | 7 | 김준석 | 영어 중국어 | 국내의 다국적기업의 기장대리(원천징수 업무 포함),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세무조사 대행 | 02-2672-2637 |
| | | | | | | | |
| 글로벌 세무회계 | 정아영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3, 효성주얼리시티 A동 505호 (인의동) | 3 | 정아영 | 영어 일어 | 국내, 외국기업의 수출입 업무, 외국기업의 원천세 신고, 외국기업의 사업자등록 및 컨설팅 상담,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보고 및 세무신고 등 | 02-2279-7777 |
| | | | | | | | |
| 누리 | 김철훈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658 번지 4층 | 3 | 김철훈 | 영어 일어 | 국제조세, 외국법인 설립, 외투기업 설립, 비거주자 세무 | 02-6436-3000 |
| | | | | | | | |
| 다산 | 류환열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98길 23, 6층 | 83 | 안종남 | 영어 | 연락사무소/지점/법인설립, 급여서비스, 장부기장, 자금관리, 회계감사, 세무서비스(고정사업장, 이전가격, 조세가격), 무역업무 지원 | 02-531-7472 02-531-7458 |
| | | | | 송성용 | 일본어 | | |
| 대맥 | 서정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1212호 | 3 | 서정민 | 일어 | 현물출자법인전환/세무조사/부동산법인/건설업/외국기업 국내진출 세무컨설팅/개인 및 법인세무관리 | 02-568-5833 |
| | | | | | | | |
| 대원 | 강영중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논현동, 한국관 세사회관2층) | 12 | 조성권 | 영어 | 국제조세 관련 컨설팅,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검토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세무조정 | 02-3016-3806 |
| | | | | 윤성우 박태현 윤기영 | | | |
| 리안 | 이상은 |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209, 8층 | 50 | 조의형 | 영어 | 외국인투자 국내진출에 관한 자문 연락사무소, 지점(branch), 자회사 설립 및 청산 외투법인 회계시스템 구축, 본사 재무보고(K-GAAP, IFRS), 기장세무신고, 자문(법인세, 부가세, 국제조세, 이전과세) HR outsourcing(급여 계산, 신고, 지급 대행) 자금관리 | 02-537-1807 |
| | | | | | | |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회계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마자르 새빛 | 박승하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 28 | 박승하 | 영어 | Tax & Accounting | 02-3438-2406 |
| | | | | 허영 | | | 02-3438-2403 |
| | | | | 이정민 | 영어 | Audit, FAS | 02-3438-2441 |
| | | | | 심규택 | | | 02-3438-2442 |
| | | | | 줄리앙 에르보 | 프랑스어 | Accounting outsourcing services | 02-3438-2431 |
| | | | | 양지선 | 영어 | | 02-3438-2473 |
| | | | | 줄리아 보체 | 독일어 | 02-3438-2556 | |
| | | | | 심지원 | 일본어 | 02-3438-2563 | |
| 보명 | 이창열 | 부산 수영구 수미로 14번길 40, 2층(수영동) | 13 | 이창열 | 영어 | 회계감사, 내부감사, 재무실사, M&A자문 | 051-328-8328 |
| 비엔 에이치 | 백상훈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서관 10층 (미래에셋 센터원) | 22 | 백상훈 | 영어 | 이전가격, 역외탈세, 해외계좌, MAP, APA, 세무조사, BEPS, 경쟁청구, 조세불복, 예규질의, 법령개정, M&A 등 자문 | 02-6030-8520 |
| 삼덕 | 이용모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S&S 빌딩 | 441 | 최권정 | 영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고정사업장 설립/신고 지원 • 급여 서비스 • 회계장부 및 재무패키지 작성 •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정 • M&A, 배당 등 세무 및 회계 자문 • 사무지원서비스 | 02-397-6602 |
| | | | | 하정훈 | | 회계감사, 가치평가, 재무실사 재무패키지 작성 | 02-397-6602 |
| 삼우 에스엔 티에이 | 이대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902호 (여의도동, 신송빌딩) | 5 | 경준호 | 일본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에 따른 각종상담업무 및 세무관련서비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세무신고와 국제조세컨설팅, 세무조사 입회 등 • 회계관련서비스 - bookkeeping, 재무제표 및 회계보고자료의 작성 등 • Payroll 서비스 - 급여의 계산 및 송금업무, 원천세신고와 연말정산, 4대보험 업무 등 | 02-3215-1300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회계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삼일 | 윤훈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 2,450 | Steven Kang (강찬영) | 영어 | Inbound Audit and IPO Servies | 02-709-4788 |
| | | | | Daniel Fertig | 영어 | Inbound Audit and Other Accounting Services | 02-709-8714 |
| | | | | 전용욱 | 중국어 | China and SE Asia Audit and Accounting Services | 02-709-7982 |
| | | | | Henry An (안익홍) | 영어 | Inbound Tax | 02-3781-2594 |
| | | | | Robert Browell | 영어 | Inbound Tax | 02-709-8896 |
| | | | | 김영주 | 영어 | Transfer Pricing | 02-709-4098 |
| 성현 | 박근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9층 | 85 | 박대준 | 영어 | Private Equity/ Valuation | 02-709-8938 |
| | | | | Steven Jeong (정승민) | 영어 | Corporate Finance3 | 02-3781-2551 |
| | | | | 이정훈 | 영어 | Transaction Services/ FDD | 02-3781-9544 |
| | | | | 이민재 | 영어 | 세무자문(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검토), 회계감사, 재무실사, 외국인투자지역신청, 고도기술사업신청대행 등 | 02-513-0208 |
| | | | | 박영아 | 영어 | 연락사무소, 지사, 현지법인설립대행 및 자문, HR아웃소싱(급여), 기업회계(기장대리), 세무실고대행(법인세, 부가세등), 세무자문(고정사업장 및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 02-513-0278 |
| | | | | 고태일 | 영어 | 연락사무소, 지사, 현지법인설립대행 및 자문, HR아웃소싱(급여), 기업회계(기장대리), 세무실고대행(법인세, 부가세등), 세무자문(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검토), 회계감사, 재무실사 | 051-460-4723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회계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성현 | 박근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9층 | 85 | 김혜윤 | 영어 | HR아웃소싱(급여), 기업회계(기장대리), 세무신고대행(법인세, 부가세등),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 등 | 051-460-4710 |
| 신화 | 양범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15, 8/9층 | 25 | 양윤기 | 영어 | M&A자문, 재무실사, 기타자문 | 02-561-7181 |
| | | | | 김광수 | 일본어 | 법인설립, 기장, 세무자문, 회계감사 | 02-553-7956 |
| 안진 | 홍종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 금융센터 One IFC 9층 | 1,018 | 장태일 | 영어 | M&A자문, 재무실사, 기타자문 | 02-555-9211 |
| | | | | 허호영 | | 감사, 회계자문, 금융기관 재무실사 및 M&A자문 등 | 02-6676-1180 02-6676-3322 |
| | | | | 이형남 | | 금융기관 회계감사, 국내진출 전반에 대한coordinating(IFRS 자문/회계처리 자문/M&A 자문 등) | 02-6676-1268 |
| | | | | 공선희 | | 금융기관 회계감사, 내부통제구축, US GAAP/IFRS 재무제표 전환 회계자문 | 02-6676-1264 |
| | | | | 박성호 | | 내부통제제도(SOX) 검토 및 구축 자문, US GAAP 및 IFRS 자문, 재무실사 | 02-6676-3160 |
| | | | | 이선희 | | M&A 자문, 재무실사, 기타 재무자문 | 02-6676-3224 |
| | | | | 황재호 | 영어 | 해외펀드 투자실사 전문, 재무관련 규정 및 기타 자문 | 02-6676-3129 |
| | | | | 유지훈 | | 회계감사(외국투자기업전문), IPO 감사 및 자문 내부통제관련 회계 자문 | 02-6676-3124 |
| | | | | 이동현 | | 회계PMI (결산 지원 및 자문, policy 교육 등) 계약이행내역 확인 Agreed upon procedures (원가 검증 등) 내부감사Co-scouring, US-SOX self-test 대행, 재고실사 대행 | 02-6676-3125 |
| | | | | 김영재 | | 회계감사, 재무실사 | 02-6676-1689 |
| 전용석 | | M&A 자문, 재무실사 | 02-6676-1524 | | | | |
| | 서정욱 | | | | | IFRS 감사 및 자문, 재무실사, 국내진출 자문 전반에 대한 coordinating | 02-6676-1871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회계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안진 | 홍종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 금융센터 One IFC 9층 | 1,018 | 나기영 | | 회계감사(IFRS, K-GAAP), M&A 자문, 기타 재무자문, 내부통제 관련 자문, 국내진출 자문 전반에 대한 coordinating | 02-6676-1530 |
| | | | | 황승희 | 영어 | 재무실사, 국내진출 자문 전반에 대한 coordinating | 02-6676-1642 |
| | | | | 유병문 | | US GAAP 및 IFRS 감사 및 자문, 재무실사, 내부통제 및 SOX 관련 회계 자문 | 02-6676-1546 |
| | | | | 김기현 | | 감사, 회계자문, 재무실사(금융기관 제외) 및 M&A 자문 | 02-6676-1397 |
| 오성 | 이석형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 9층 | 13 | 이석형 | | 외국인투자총관, 회계감사, M&A컨설팅, 기업실사, 세무컨설팅 | |
| | | | | 위영 | | 외국인투자신고, 외투기업/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립, 외국기업한국진출 자문, 법률자문 | |
| | | | | 김건태 | 영어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행, 영어권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아웃소싱, 급여대행, 4대보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본사에 대한 재무보고, 재무관리 | 02-2631-1230 |
| | | | | 박주현 |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행, 영어권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아웃소싱, 급여대행, 4대보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본사에 대한 재무보고, 재무관리 | |
| | | | | 이진욱 |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행, 영어권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아웃소싱, 급여대행, 4대보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본사에 대한 재무보고, 재무관리 | |
| | | | | 이순원 |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행, 영어권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아웃소싱, 급여대행, 4대보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본사에 대한 재무보고, 재무관리 | |
| | | | | 김정은 |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행, 영어권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아웃소싱, 급여대행, 4대보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본사에 대한 재무보고, 재무관리 | |
| | | | | 박영련 | 중국어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행, 중국어권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아웃소싱, 급여대행, 4대보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본사에 대한 재무보고, 재무관리 | |
| | | | | 조영 | 중국어 영어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행, 일본계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아웃소싱, 급여대행, 4대보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본사에 대한 재무보고, 재무관리 | |
| | | | | 차준린 | 중국어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행, 일본계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아웃소싱, 급여대행, 4대보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본사에 대한 재무보고, 재무관리 | |
| | 마시오 유미코 | 일본어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행, 일본계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아웃소싱, 급여대행, 4대보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본사에 대한 재무보고, 재무관리 | | | | |
| 위드 | 김원현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5 2층 210호 | 7 | 주영진 | 영어 | 외투기업의 재무상태의 해외보고서비스 및 세법적 유의사항 검토, 예상 재무제표 및 손익분석보고 | 032-858-9175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회계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 위드 플러스 | 최세영 |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152 삼성빌딩, 2층 | 8 | 최세영 김현준 조덕희 | 영어 일어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지원(현지법인 및 지사), 외국인투자기업 운영지원, 일본내 지점 및 자회사 설립, 본지점 종합리뷰 서비스, 아웃소싱 서비스, 일본기업 M&A 지원 서비스, 국제간상속세신고 및 지원 | 02-576-9659 | |
| 이촌 | 김명진 | 서울시 마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 116 | 유성일 | 영어 중국어 |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 및 자문, Booking 및 세무신고대행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원천세 등), 국제조세자문, 회계감사, M&A실사 및 자문, 일반세무 및 재무자문 | 02-780-0889 | |
| | | | | | 정성문 | 영어 |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 및 자문, 세무자문(조세감면 등, 법인세제 관련 자문), 세무신고대행(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소득원천세 신고대행), 기업회계(기장대리) | 02-6617-7210 |
| 인덕 | 김종필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3층 | 130 | 오윤택 | 영어 | 외국법인 및 외투법인 인가, 설립, 청산 자문 외국법인 외투법인 기장대행(아웃소싱) 급여 및 4대보험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행 조세 감면 및 조세불복 회계감사 | 010-3898-2035 | |
| | | | | | 이선규 | 일본어 | 일본계기업 설립 및 청산, 일본계 기업 기장 및 세무신고, 법인세 자문, 일본계기업 조세불복, 일본계기업 회계감사 | 010-9145-0584 |
| | | | | | 신성호 | 영어 | M&A, 재무실사, Due diligence, 기업평가 | 010-3893-7265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회계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정진 세립 | 전이현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1 유성빌딩 3,4,5층 | 91 | | 영어 | 1. 아웃소싱 업무 • 매출 급여관련 업무 • 장부기장 업무 및 매출 제무제표 제공 • ERP 시스템을 통한 분사 월별 리포팅 •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 월 방문을 통한 증빙자료 관리 업무 • 해외송금 등을 포함한 बैं킹업무 | 02-555-1559 |
| 정현 | 엄태철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하이츠 빌딩 1810호 | 5 | 엄태철 | 나상택 | 2. 자문서비스 3. 회계감사 업무 4. 세무조정 및 신고 업무 5.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 지점 등 설립업무 | 02-6138-8811 |
| | | | | | 영어 | 법인세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국제조세업무(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등), 각종 세무조사대리, 컨설팅 등 | 02-565-8649 |
| 제원 | 박문식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화관 | 28 | | 김상윤 | 회사설립,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회계 및 세무위탁업무, 회계감사, 세무조사 대응, 급여 및 4대보험 업무, 기타 회계세무 종합자문, 재무실사 및 기타 재무자문 | 02-511-1402 |
| | | | | | 최병호 |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 안내, M&A자문, 재무실사, 회계감사, 부기대행, 세무대리 | 02-512-0164 |
| 진일 | 배영석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 11 일신빌딩 701호 | 55 | | 최영윤 |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대리, 그룹보고패키지 작성 대행), 세무자문 | 02-6095-2137 |
| 천지 | 박점식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6차 1604호 | 20 | 김소연 박수현 | 영어 | 국내진출 개인사업자, 외투법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업무대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세액감면 공제 등에 검토 등 세무컨설팅 | 02-597-2900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회계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케이앤피서초 | 김병림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72 서호빌딩 5층 세무법인KNP 서초지사 | 3 | 김주현 | 영어 | 개인세금신고 Form1040, 법인세금신고 Form1120, 파트너쉽신고 Form1065,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 FATCA, 금융계좌자진신고 OVDP, 해외법인/외국인투자법인 기장대리, 국적포기세 상담, 미국 상속/증여세 신고, 미국부동산 투자 가이드, 미국투자이민 지원, 미국 법인설립, 국제조세컨설팅 | 010-8806-4664 |
| 케이파트너즈케이에스디국제조세컨설팅 | 김성동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3 (서초동 송남빌딩 211호) | 7 | 김성동 | 영어 | 조세조약, 비거주자 외국법인 관련 내국세법 관련 업무 | 02-562-0055 |
| 태성 | 남상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6-2 케이큐브 빌딩5층 | 200 | 김민정 | 영어 | 자회사 및 지사 연락사무소설립대행 외국인투자 기업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 외국인투자기업 감사 및 경영컨설팅 | 02-561-6513 |
| | | | | 정하준 | | M&A 자문, 재무실사 | 02-561-0994 |
| 티유 | 이권대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1206 (재송동, 큐비e센터) | 5 | 이은숙 | 영어 | 국내외 기업 기장대리, 세금신고, 법인 설립시 업무대행 | 051-639-9680 |
| 하나 | 이규섭 김용철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9길72 (역삼동, 올림피아센터3층) | 40 | MichaelM. Lee | 영어 | 국내진출 외국기업을 위한 기장 및 세금신고, 급여 관련 신고,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설립 및 철수관련 조세상담 및 국내 조세, 최적화 전략 업무, 이진가격관련 자료제출 및 대응, 외국진출 국내기업의 설립 및 철수 등에 대한 조세전략 상담, 조세불복 대행과 개인 및 법인의 조사업무 대행 | 02-2009-1681 |
| | | | | Christie S. Lee | | 02-2009-1682 | |
| | | | | Ara. Jung | | 02-2009-1631 | |
| | | | | Carlos H. Jung | | 02-2009-4327 | |

| 법인명 | 대표명 | 주소 | 소속 회계사 수 | 업무별 담당자 | 가능 언어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 한영 | 박용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2-8F | 1,033 | 김지훈 | 일본어 | 회계감사 | 02-3787-6745 | |
| | | | | 신금철 | | | 02-3787-6372 | |
| | | | | 신훈식 | | | 02-3787-6884 | |
| | | | | 김홍식 | | | 02-3787-6810 | |
| | | | | 우승엽 | | | 세무자문, 세무신고 대행(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신고,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대행) | 02-3787-6508 |
| | | | | 신장규 | | | 02-3770-0954 | |
| 한울 | 남기봉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신도빌딩 6층 | 222 | 우승백 | 영어 독일어 일본어 | 일반세무자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관련 자문 | 02-3787-6320 | |
| | | | | 남기봉 | 영어 | 인증 심사 자문, 세무 기장 자문 | 02-2009-5762 | |
| | | | | 강정대 | | 02-2009-5701 | | |
| | | | | 이준우 | 영어 중국어 | 회계감사, 재무실사, 가치평가, 기장(세무) 대리 | 02-2084-5811 | |
| | | | | 고현철 | | 회계감사, 기장(세무) 대리, 기타자문 등 | 02-2084-5680 | |
| | | | | 김성휘 | | 현지법인설립, 기장, 세무대리 | 010-8305-0490 | |
| 윤형근 | 02-2084-5825 | | | | | | | |
| 권일규 | 중국어 | 02-2009-5784 | | | | | | |
| INPACT 세일윈 | 조형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21 화인강남 빌딩 6층 | 47 | 홍영지 | 영어 | 인증 심사 자문, 세무 기장 자문 | 02-316-6639 | |
| | | | | 심지수 | | | 02-316-6622 | |
| | | | | 위상영 | 중국어 | 외투법인 설립 및 청산 대행, 외국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대행, 외투법인 등에 대한 기장 및 본사 보고 대행, HR아웃소싱, 세무신고 대행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및 절세방안 연구, 세무조사 대행(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및 조세조약 검토), 외국인투자유치 및 관련자문, M&A 자문 | 02-316-6621 | |
| | | | | 박상현 | | | 02-316-6638 | |
| | | | | 문길모 | 영어 | 외투법인 설립 및 청산 대행, 외국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대행, 외투법인 등에 대한 기장 및 본사 보고 대행, HR아웃소싱, 세무신고 대행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및 절세방안 연구, 세무조사 대행(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및 조세조약 검토), 외국인투자유치 및 관련자문, M&A 자문 | 02-564-0026 | |
| | | | | 한중희 | | | 010-5265-9460 | |
| | | | | 장인인 | 중국어 | 02-564-0026 | | |

외국인투자가이드 2021

발행일 2021년 2월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
주소 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7 Invest Korea (KOTRA) 2층 투자종합상담실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 www.investkorea.org
ISBN 979-11-6490-816-5 (93320)
979-11-6490-817-2 (95320)(PDF)

